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크로아티아

I .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크로아티아 공화국(Republic of Croatia)
면적	56,594 km ² (자료원 : 크로아티아 통계청, 2022.9 기준)
수도	자그레브(Zagreb)
민족(인종)	
언어	크로아티아어(라틴문자 사용)
종교	가톨릭(79.0%), 세르비아정교(3.3%), 이슬람(1.3%) 등
기후	◦ 아드리아해 연안: 지중해성 기후 ◦ 북동부 지역: 대륙성 기후
국가원수	◦ 대통령: 조란 밀라노비치(Zoran Milanovic) ◦ 총리: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c)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992-11-18 (자료원 : 주크로아티아 대한민국 대사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무역협정	1995-11-15	최혜국 대우를 통한 무역 증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협정	2001-01-16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 협정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2001-06-16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면제 협정	
이중과세방지협약	2006-09-15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조세협약	
문화, 과학, 교육, 예술 및 체육분야 협력협정	2013-01-08	양국간 동 분야 상호관계 발전 및 협력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	
무역협정 종료	2013-09-12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2013-07-01)에 따라 기존 무역협정 종료	
한-EU FTA 크로아티아 추가의정서	2016-01-01	한국-EU FTA를 크로아티아에게도 적용	
항공협정	2016-09-15	양국 항공사의 정기편 취항 및 항공사간 편명공유 허용	
한-EU 기본협정 크로아티아 추가의정서	2018-08-0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을 크로아티아에게도 적용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 서명	2018-12-21	크로아티아에 파견 또는 자영업 종사 우리 국민의 연금보험료 최초 5년간 면제	

한국교민 수

150 명 (자료원 : 주크로아티아 한인회/2022년 5월)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한국-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 서명

2018. 12. 18.(화) 서울에서 양국은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사회보장협정은 사회보험 이중납부 면제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골자로 한다. 사회보장협정 발효 시, 연금보험료 이중부담 면제로 크로아티아 진출 한국기업 및 노동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연금 가입기간 합산 계산에 따라 크로아티아 거주 국민의 연금 수급권이 개선될 전망이다.

- 주한 크로아티아 상주대사관 개설

주한 크로아티아 상주대사관이 2018. 10. 24.(수) 서울에 개설되었다. 2005년 한국 대사관이 자그레브에 개설된 이후 13년 만에 주한 크로아티아 대사관이 개설됨으로써 양국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이 마련되었다.

- 한국-크로아티아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해양수산부와 크로아티아 해양교통인프라부가 2018. 9. 10.(월)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양국은 자국 선박에 상대 국가의 해기사를 승선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 청년 해기사들이 크로아티아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 2022년은 한국과 크로아티아가 수교 30주년 기념(11월18일)으로 다양한 문화 경제 행사 예정되어 있다.

경제

- 2021 한국-크로아티아 비즈니스 포럼 개최

2021년 개최된 경제 포럼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특히 한국에서 결성된 친크로아티아 기업인들의 모임인 한-크로아티아 비즈니스 혁신협회(KCBC : Korea Croatia Business Innovation Council)의 기업들이 자그레브를 방문하여 포럼에 참석하였다. 포럼 측 한국 측 참석자에는 여행협회 관계자와 수입협회 임원들도 포함되어 수입협회의 경우 크로아티아 수출기업과 1:1 상담을 가지기도 하였다. 포럼은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일반 경제협력, 인프라 협력, 관광 분야에 대해 양측 기업인들의 발표가 있었다. 한국-크로아티아 비즈니스 포럼은 2021년 기준 9회째를 맞이했으며 2022년에도 개최 예정이다. 주제는 매년 상호 협력 가능한 분야를 협의하여 선정하고 있다.

- 2021 한국식품 홍보사업

크로아티아에 한국식품을 알리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1개월간 한국식품 시음회,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한국식품 비즈니스 세미나 등이 열려 현지의 식품 바이어 및 친한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홍보사업을 통해 소개되어진 음식으로는 김치, 라면, 만두, 떡볶이, 잡채, 막걸리 등이 있다.

- 2020 한국-크로아티아 의료산업 협력 포럼 개최

2020년 개최된 경제 포럼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양국의 코로나 대처방안, 백신 동향 등의 지식 공유를 위해 의료분야로 주제를 선정하고 온라인 웨비나 형식으로 개최하였다. 주크로아티아 대사관 및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공동으로 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질병관리청과 셀트리온 등이 연사로 발표하였으며 양국 기업인 80여 명이 참여하였다.

- 2019 한국-크로아티아 환경산업 협력 포럼 개최

환경부, 환경산업협회, 크로아티아 환경에너지부, 크로아티아 환경에너지공단, 주 크로아티아 대사관 및 KOTRA 자그레브 무역관은 공동으로 2019. 6. 13.(목)에 환경협력 포럼을 자그레브에서 개최했다.

- 한국-크로아티아 과학기술협력 MOU 체결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크로아티아 과학교육부는 2019. 2. 13.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공통 관심 분야인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생명과학, 환경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가 확대될 전망이다.

- 2018 한국-크로아티아 비즈니스 포럼 개최

주크로아티아 대사관과 크로아티아 경제부, 보건부, 크-한 비즈니스 클럽, KOTRA 자그레브 무역관은 공동으로 양국 간 화장품 산업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9. 19.(수)에 비즈니스 포럼을 자그레브에서 개최했다.

문화

- 2022년 한-크로아티아 수교 30주년 기념 인천시립무용단 특별 공연 개최

- 2022년 7월2일 수교 기념을 위해 자그레브 리신스키 콘서트홀에서 인천시립무용단 초청 특별 공연이 주크로아티아 대사관과 크로아티아 문화미디어부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 2022년 한-크로아티아 수교 30주년 기념 로고 디자인 공모전 실시

- 2022년 3월부터 2달간 공모전 실시, 채택된 디자인은 수교 기념 행사에 공식 디자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조수미 소프라노 초청 공연

- 2021년 10월 30일 한국주간 계기로 조수미 소프라노 초청 공연을 가졌다.

- 한국 대사관 SNS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 주크로아티아 대사관은 2021년 4월부터 양국의 주요 행사 또는 관심 스토리 등을 SNS 를 통해 공유 및 홍보하는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운영 중에 있다.

- 제1회 크로아티아 '퀴즈 온 코리아' 개최

- 주크로아티아 대사관은 2020년 7월 4(토)일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K-Pop, 한국 문화 등에 관심이 있는 크로아티아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퀴즈 대회를 개최하였다. 총 22명이 참가하였으며, 오찬으로 한식 도시락이 제공되었다.

- K-pop 노래 및 댄스 경연대회 연례 개최

- 주 크로아티아 대사관은 K-Pop World Festival 지역예선을 겸한 K-Pop 노래 및 댄스 경연대회를 연례 개최한다. 2019. 6. 15.(토)에 제6회 대회가 150여 명의 K-Pop 애호가들이 관람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 한국 영화주간 연례 개최

- 주크로아티아 대사관은 매년 한국 영화주간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의 역사, 문화 등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한국 상업/예술 영화를 크로아티아에 선보이고 있다. 2018년 10월에 자그레브와 리예카에서 제8회 영화주간이 개최되었으며 약 1,000명의 관객이 영화를 관람했다.

- 한국-크로아티아 경찰 합동순찰

- 2019. 4. 11.(목) 한국-크로아티아 관광시즌 치안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2개월간 한국 경찰관 6명이 자그레브, 스플리트, 두브로브니크에서 한국 관광객 보호를 위한 합동순찰 활동을 했다. 크로아티아는 2006년부터 외국 경찰을 관광 성수기 시즌(7, 8월)에 초청하고 있으며 현재 1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	2.9	3.48	-8.1	10.4	
명목GDP (십억\$)	62.2	62.2	57.2	67.8	
1인당 GDP (PPP, \$)	28,842	30,552	28,535	32,943	
1인당 명목 GDP (\$)	15,227	15,313	14,131	16,818	
정부부채 (% of GDP)	73	71	87	80	
물가상승률 (%)	1.5	0.77	0.11	2.61	
실업률 (%)	9.86	7.76	9.19	8.17	
수출액 (백만\$)	17,176.79	16,941.11	17,192.66	22,715.35	
수입액 (백만\$)	28,072.81	27,387.82	26,830.57	34,429.81	
무역수지 (백만\$)	-10,896.02	-10,446.71	-9,637.91	-11,714.46	-
외환 보유고 (백만\$)	19,991.3	20,770.64	17,351.53	25,021.6	
이자율 (%)			0.2	0.1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6.28	6.62	6.96	6.36	

〈자료원 : IMF,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GTA〉

나. 경제 동향

크로아티아 경제는 2015년부터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했으며, 2019년까지 3% 후반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했다. 관광산업의 기록적인 호황이 경제성장을 견인했고, 그 배경에는 2013년 EU 가입으로 높아진 EU 권역 내 접근성과 세계경기회복에 있다. 이 외에도 민간소비와 순수출 증가가 크로아티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호텔, 교통 인프라 투자 증가로 고정자산 투자 역시 연 4%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경제지표는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크로아티아도 2020년 COVID-19의 영향으로 금융위기 이후 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며 8% 내외의 GDP가 줄어들었다. 특히 COVID-19 여파로 인해 크로아티아 경제를 이끌었던 서비스산업(GDP의 30% 이상 차지)이 타격을 받았는데 실업률 상승과 숙박 및 요식업의 매출 하락이 한동안 지속되었다.

다만 2021년은 우려와는 달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었다. 당초 2020년 COVID-19로 떨어진 성장률 정도만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실제 결과를 보니 그 이상의 성장률을 하게 되었다. 이는 2분기 성장률이 16% 대로 나와 4분기만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큰 폭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3분기, 4분기에도 계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관광객도 COVID-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2021년 13.8백만명이 방문하였으며 관광객으로 인한 국가 수익도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2021년도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수익은 91억 유로로 전년대비 89% 늘었으며 2019년과 비교하면 87% 정도 수준까지 회복하였다. 관광객이 돌아온 것 이외에도 인플레이션이나 가계 소비 지출, 고정 투자 등의 지표 또한 건실하여 경제회복에 큰 보탬이 되었다. 크로아티아는 COVID-19 제한 조치를 비교적 일찍부터 완화하였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무리가 없었다. IMF의 통계와 EU,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경제성장률은 10% 이상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더불어 여러 경제지표들이 건실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2022년 상반기는 경제회복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실질 2분기 GDP가 전년대비 7.7% 상승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다만 명목 GDP는 같은 기간 18.3%를 기록하여 실질과 명목 GDP 간 차이가 매우 많은데 이는 인플레이션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경기는 회복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크로아티아도 인플레이션 압박이 거세며, 미 달러환율이 치솟은 상태다. 이로 인해 소비나 투자가 줄어들어 일부 경제 성장의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다. 경제 전망

2022년 경제성장은 당초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2021년에 기대 이상으로 COVID-19 상황에서 경제가 선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인플레이션, 자국내 화폐 절하 등의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다.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크로아티아는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였고 전반적인 물가도 크게 상승하였다. 2022년 9월까지 국영석유기업인 INA에서는 수차례 휘발유와 디젤가격을 인상한 바 있으며 가정용 전기값은 한때 전년대비 4배 이상 인상되기도 하였다. 물가 상승으로 최근 많은 기업들이 종업원들의 임금을 인상하였지만 인상률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 하는 실정이다. 미화 환율은 전년도 1달러당 6.5쿠나 내외에서 현재는 유로화와 비슷한 7.5쿠나까지 치솟아 15% 내외 평가절상되었으며 이는 수입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현지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듯 2022년 4월 IMF는 기존 2022년 경제성장률인 5.8%를 2.7%로 재 조정하였으며 EU는 5월 기준 4.8% 전망치를 3.4%로 낮추었다. 다만 정부의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재정정책, 보조금 정책, 가격 제한 정책과 더불어 하반기 원자재 가격 안정에 힘입어 긍정적인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도 하다. 크로아티아 중앙은행은 2022년 7월 상반기 3.2%로 낮춘 GDP 성장 전망치를 5.5%로 재 조정한 바 있다.

2022년 경제성장의 변수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2021년까지 계속되었던 COVID-19의 악영향은 2022년에는 제한적으로 예상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70% 이상의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경 입국시 필요했던 서류들을 완전히 폐지해 COVID-19 이전으로 돌아간 상태이어서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에는 걸림돌이 거의 사라졌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크로아티아는 2023년 1월1일부로 유로존에 가입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가입은 2022년 7월 유럽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종 승인되었으며 20번째 유로존 국가가 되었다. 기존 화폐 쿠나와의 공식 환율은 1유로당 7.53450 쿠나이다.

유로존 가입과 같이 쉥겐 가입도 추진중에 있는데 유로존 및 쉥겐 가입을 현지에서는 사실상 기정 사실화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유로존 가입과 쉥겐 가입은 크로아티아 경제가 한 층 선진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외국기업들의 투자처로 재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제조업 투자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자그레브 인근을 포함 지방도시에는 아직 기업 투자가 이뤄지지 못 한 산업공단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른 유로존 국가대비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한 것도 장점이며 EU 진출의 우회시장으로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중장기적 관점으로 크로아티아는 OECD 가입도 추진 중에도 있다. 유로존 가입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오는 관광객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일부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기대는 높은 편이다.

다만 크로아티아의 경제의 불안요소로 인구유출 및 고령화가 심각하여 우려를 낳고 있다. 현지에서 취업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이 적은 것이 큰 이유인데 2021년 실시된 인구 센서스에서 집계 인구수가 처음으로 4백만 아래인 390만 명으로 나왔으며 65세 이상 인구는 22.45%로 집계되었다. 인구 유출이 심한 반면 건축 및 관광시즌에는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여 2022년 상반기에만 77,205명의 외국인에게 노동 허가가 주어졌다. 크로아티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네팔, 코소보 등지에서 오고 있다. 정부는 인구 유출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중인데 당분간 이런 트렌드가 바뀔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이탈리아	2,567,189,002
2	독일	2,335,526,812
3	슬로베니아	1,906,402,454
4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613,190,262
5	오스트리아	1,145,489,603
6	세르비아	849,324,140
7	헝가리	591,741,399
8	프랑스	472,029,447
9	미국	441,560,838
10	스페인	329,564,447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이탈리아	2,432,819,755
2	독일	2,275,898,571
3	슬로베니아	1,839,051,711
4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705,338,726
5	오스트리아	1,032,170,110
6	세르비아	908,233,421
7	헝가리	726,352,749
8	프랑스	518,448,253
9	미국	508,625,655

10	스페인	342,326,911
----	-----	-------------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2,200,925,702
2	이탈리아	2,148,510,499
3	슬로베니아	1,753,186,449
4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455,511,390
5	헝가리	1,224,488,501
6	오스트리아	1,060,331,822
7	세르비아	912,710,432
8	미국	605,132,691
9	프랑스	539,005,702
10	루마니아	358,033,514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4,321,371,777
2	이탈리아	3,722,443,993
3	슬로베니아	3,141,755,587
4	헝가리	2,172,815,533
5	오스트리아	1,946,960,841
6	네덜란드	1,070,733,144
7	폴란드	1,058,997,382
8	중화인민공화국	1,025,898,268
9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869,361,856
10	체코	778,476,837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4,359,378,241
2	이탈리아	3,916,141,828
3	슬로베니아	3,238,177,533
4	헝가리	2,368,383,927
5	오스트리아	1,814,630,264
6	네덜란드	1,112,047,764
7	폴란드	1,073,022,471
8	중화인민공화국	882,287,627
9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782,963,038
10	프랑스	782,289,415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3,992,777,621
2	이탈리아	3,200,565,564
3	슬로베니아	2,944,515,379
4	헝가리	2,032,345,343
5	오스트리아	1,723,972,373
6	중화인민공화국	1,250,716,296
7	폴란드	1,055,124,299
8	네덜란드	1,033,505,162
9	벨기에	820,083,287
10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763,119,080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952,839,880
2	300490	기타	548,428,670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393,395,559
4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 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323,297,101
5	271600	전기에너지	309,020,742
6	440791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190,076,908
7	854449	기타	174,550,727
8	420500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159,679,836
9	901910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158,217,402
10	850423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152,822,716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878,334,759
2	300490	기타	572,497,855
3	890110	순항선 · 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	325,667,189
4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 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317,008,160
5	271600	전기에너지	291,044,658
6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279,385,964
7	854449	기타	169,909,851
8	420500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162,484,161
9	440791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161,273,827
10	730890	기타	159,835,805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672,109,325
2	300490	기타	522,951,940
3	271019	기타	446,760,967
4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 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374,797,567
5	850423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221,676,941
6	271600	전기에너지	221,054,440
7	100590	기타	208,828,750
8	940690	기타	185,804,603
9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62,819,576
10	760612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161,996,858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597,846,897
2	271019	기타	917,552,251
3	300490	기타	680,310,470
4	271600	전기에너지	651,385,415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623,797,444
6	271121	천연가스	361,425,947
7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 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328,976,120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05,520,224
9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269,172,784
10	760120	알루미늄 합금	240,726,173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049,420,230
2	271019	기타	977,768,462
3	300490	기타	748,134,829
4	271600	전기에너지	659,967,418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577,952,606
6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359,213,353
7	270112	유연탄	329,773,051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321,796,643
9	271121	천연가스	309,962,160
10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05,476,475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90	기타	787,587,662
2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627,331,971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586,503,182
4	271019	기타	535,878,778
5	271600	전기에너지	439,838,321
6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364,001,868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12,737,720
8	271121	천연가스	261,310,358
9	760120	알루미늄 합금	230,967,003
10	890590	기타	189,481,205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8	241	19	222
2019	241	27	214
2020	97	23	74
2021	142	34	108
2022	102	89	13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20	0	19
2	2150	합성고무	15	0	14
3	6135	전기강판	7	0	7
4	7290	기타산업기계	2	0	1
5	2140	합성수지	5	0	5
6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	0	0
7	6212	알루미늄조가공품	0	0	-1
8	7131	공기조절기	9	0	8
9	8352	축전지	1	0	0
10	7902	기타기계류부품	6	0	6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12	0	12
2	2150	합성고무	11	0	11
3	6135	전기강판	9	0	9
4	7290	기타산업기계	8	0	8
5	2140	합성수지	8	0	8
6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7	3	4
7	6212	알루미늄조각품	5	0	5
8	7131	공기조절기	5	0	5
9	8352	축전지	4	0	4
10	7902	기타기계류부품	2	0	2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130	동광	0	11	-11
2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	0	0
3	5142	취미오락기구	0	1	-2
4	3103	필름류	2	0	1
5	6172	주철	1	0	0
6	4411	편직제의류	0	3	-3
7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1	0	0
8	8331	저항기	0	2	-2
9	7412	화물자동차	0	0	0
10	8333	축전기	0	2	-2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130	동광	0	69	-69
2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7	3	4
3	5142	취미오락기구	0	2	-2
4	3103	필름류	1	2	-1
5	6172	주철	0	2	-2
6	4411	편직제의류	0	2	-2
7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1	1	0
8	8331	저항기	0	1	-1
9	7412	화물자동차	0	1	-1
10	8333	축전기	0	1	-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화장품		
HS Code	330499	수입액('21/US\$백만)	122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백만)	0.30
선정사유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3% 성장(과거 3년 연평균 10% 성장). 전체 시장 규모 1.2억 달러 - 한국 화장품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한국으로부터의 직접 수입은 30만 달러에 머물러 있어, 향후 직접 수출 가능성 다대		
시장동향	- 메이크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스킨케어 제품 수요가 저조함 - 통상 스킨케어 제품 수요가 메이크업 제품보다 높은 것을 고려 시, 스킨케어 제품수요 증가 예상 - 2017년 한국으로의 직수입 규모가 3만 달러 규모에서 2021년 30만 달러까지 성장 - 현지 주요 소비재 소매점에서 스킨케어 중심으로 한국산이 인기		
경쟁동향	- 프랑스가 전체 수출의 25%(21.4백만 USD)를 차지하는 가운데, 독일(20 백만 USD), 헝가리, 슬로베니아 순임. - 메이크업, 향수류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의 유명브랜드가 시장 장악 - 스킨케어, 기능성 화장품 시장은 치열한 경쟁 예상		
진출방안	- 유럽진출을 위해선 CPNP 등록은 필수 선결과제 - 병행수입, 온라인 마켓 소비자의 호평에도, 아직 직수입자는 소수에 불과한 상태 - 시장규모를 감안할 시, 적절한 수입상을 선정하여 독점거래를 추천		

품목명 2	산업용드론		
HS Code	852580	수입액('21/US\$백만)	35.6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백만)	0.2
선정사유	- 농업, 산림, 해양 개발 산업 및 국방 분야에서 산업용 드론 수요 지속 - 2020년 지진피해 이후, 드론을 통한 모니터링 활성화		
시장동향	- 산업용 드론 분야는 시장태동단계 - 주요 전기/전자 유통사를 중심으로 유망제품 발굴에 관한 관심 높음		
경쟁동향	- 드론 시장 전체를 보면 중국 제품이 80% 이상 점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이 있음 - 산업용 드론의 경우 시장태동단계		
진출방안	- 전시회, 화상상담을 통해 적정 유통사 발굴 필요		

품목명 3	폐기물 처리 장비		
HS Code	847989	수입액('21/US\$백만)	54.2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백만)	0.03

선정사유	EU 기준에 부합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나, 시설 보급률은 매우 낮아 향후 장비 수요 지속될 것으로 판단
시장동향	코로나19로 인해 폐기물 처리 장비 도입이 지연되었으나, 정부 주도로 2022년부터 보조금 지급 등의 촉진 정책 발표가 기대
경쟁동향	인접국인 독일, 이탈리아가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최근 중국산 제품도 진출
진출방안	공공 입찰 및 현지 정책에 대비하여 현지 건설 및 시공사, 수입 유통사와의 협업 관계 구축 필요

품목명 4	전자담배		
HS Code	854370	수입액('21/US\$백만)	34.4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백만)	0.09
선정사유	- 크로아티아의 흡연율은 인근국 대비 높은 편이며 흡연피해에 대한 경각심 증가로 인해 전자담배 이용자 비율 증가		
시장동향	- 2021년 수입액, 전년대비 32% 성장 -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 모두 시장의 확대 중		
경쟁동향	- 주요 유통경로는 온라인 쇼핑몰이며,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중국이 전체 시장의 50%(35 백만 USD) 이상을 장악 - 아이코스, 글로(GO) 브랜드 시장 주도		
진출방안	- 크로아티아 시장은 우리 기업에 미개척 시장 - 유럽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크로아티아를 EU 시장의 테스트베드로 활용 가능		

품목명 5	체외 진단기기 및 시약		
HS Code	382200	수입액('21/US\$백만)	96.5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백만)	4.0
선정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 테스트 및 체외 진단기기 시장 수요 지속 - EU 차원의 국산 진단기기 고평가 - 높은 국산 코로나19 진단기기 인지도로 활용, 품목 확대 가능할 것으로 판단		
시장동향	- 한국산 직수입은 10% 정도 감소하였지만 슬로베니아를 통해 들어오고 물량은 집계에서 누락(슬로베니아로부터 수입은 300% 증가) - 진단 신속성 및 정확성을 갖춘 고품질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		
경쟁동향	- 독일이 전체 시장의 25%를 장악한 가운데, 영국과 한국 등이 경쟁 중 - 현지 보건 당국, 서유럽 대비 낮은 의료 예산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 중시		
진출방안	- 소규모 시장을 고려하여 현지 1개 사 디스트리뷰터를 통한 공급 계획 수립 - 글로벌 디스트리뷰터를 통한 간접 진출도 가능(예시: 한국 수출기업 Roche를 통해 제품 공급)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스마트락 홈솔루션
-------	-----------

선정사유	- 서유럽 대비 스마트락 보급률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렌탈 비중이 높은 휴양지 숙소 중심의 제품 보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 - Airbnb 등 공유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해 하우스 단기 대여 공급 확대
시장동향	- 대략적인 시장 규모는 5백만 달러로 약 15만 가구가 하우스렌탈 사업을 하는 것으로 관측됨
경쟁동향	- 아직 신규시장으로 소수의 업체만 활동 중
진출방안	- 신규시장으로 시장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소 규모 에이전트 선정 필요

품목명 2	의료영상전송 시스템
선정사유	- EU 기금 활용 병원현대화 및 정부의 의료관광 육성으로 시장 확대 예상
시장동향	- 60여 개의 주요 병원 및 헬스센터들이 5~7년 내 모두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
경쟁동향	- 크로아티아 기업 VAMS TEC가 시장을 장악 - 이 외 IBM, Ericsson 등이 활동 중
진출방안	- 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큰 디지털 방사선기기 공급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주효

품목명 3	관광 서비스
선정사유	- 크로아티아 GDP의 약 20%가 관광산업에서 비롯되는 관광국가 - 한국 관광객 급증으로 한국인 관광객 대상 서비스 수요 확대
시장동향	- 크로아티아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관광객 수는 약 10%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 아시아 국가 최초로 대한항공이 정기직항편을 취항함에 따라 양국 인적교류 확대 전망
경쟁동향	- 소수의 한국 로컬 여행사 활동 중
진출방안	- 한국 관광객 증가에 맞추어 한국과 현지 시장에 정통한 파트너 발굴 및 직접 회사 설립 등

품목명 4	건설, 플랜트
선정사유	- EU 경기 회복기금을 활용한 각종 프로젝트 추진 예정
시장동향	-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기금(RRF) 34억 유로를 활용하여 에너지, 환경, 물류 인프라 분야 중심의 투자 발표

경쟁동향	- 건설, 플랜트 입찰 시장에는 독일, 스페인, 이태리 등 현지 실적을 다수 보유한 EPC 업체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EU 내에서의 EU기업 보호 움직임도 일부 포착되어, 우리 기업들의 면밀한 사업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진출방안	- 현지 로컬 EPC 기업들의 경우, 기술 수준이 우수한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도 높게 점치고 있어, 이들 기업과 협력하여 프로젝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발주처 접촉을 통해 신뢰 구축을 사전에 이루는 것도 필요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FTA(Free Trade Agreement)	대한민국	2010-10-06	2015-12-13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 및 2015년 12월 13일 전체 발효
A(Agreement)	스위스	1972-07-22	1973-01-01	
CA(Co-operation Agreement)	시리아	1977-01-01		잠정 중단
CU(Customs Union)	안도라	1990-06-28	1991-01-01	산 마리노, 모나코, 안도라 3개국과 Association Agreement 진행 중 (2014.12.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1.12)
CU(Customs Union)	산마리노	1991-12-16	2002-04-01	산 마리노, 모나코, 안도라 3개국과 Association Agreement 진행 중 (2014.12.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2.7)
EAA(Economic Area Agreement)	아이슬란드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노르웨이	1992-05-02	1994-01-01	
CU(Customs Union)	터키	1995-01-01	1995-12-3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스라엘	1995-11-20	2000-06-01	
AA(Association Agreement)	모로코	1996-02-26	2000-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중 (2013.3.1 협상개시, 2019.6 재추진) 협정 현대화 추진 중 (2021.9 추진)
PCA(Updat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르메니아	1996-04-22	2018-06-01	잠정 발효
A(Agreement)	페로제도	1996-12-06	1997-01-01	

IAA(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팔레스타인	1997-02-24	1997-07-01	
AA(Association Agreement)	요르단	1997-11-24	2002-05-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마케도니아	2001-04-09	2004-04-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집트	2001-06-25	2004-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알제리	2002-04-22	2005-09-01	
AA(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2002-06-17	2006-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알바니아	2006-06-12	2009-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몬테네그로	2007-10-15	2010-05-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세르비아	2008-04-29	2013-09-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8-06-16	2015-06-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카리포룸(CARIFORUM)	2008-10-15	2008-12-29	잠정 발효(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그라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공화국,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IE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카메룬	2009-01-15	2014-01-01	잠정 발효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피지	2009-07-13	2014-07-28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파푸아뉴기니	2009-07-30	2011-05-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동남아프리카(Eastern and Southern Africa)	2009-08-29	2012-05-14	잠정 발효(마다가스카,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브웨)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라크	2012-05-01	2012-08-01	잠정 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with a strong trade component)	중앙아메리카(central america)	2012-06-29		
TA(Trade Agreement)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2012-07-26		잠정 발효 콜롬비아(2013년 8월 1일), 페루(2013년 3월 1일), 에콰도르(2017년 1월 1일)
DCFTAA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Association Agreement)	우크라이나	2014-05-29	2016-01-01	잠정 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조지아	2014-06-27	2016-07-01	
AA(Association Agreement)	몰도바	2014-06-27	2016-07-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코소보	2015-10-22	2016-04-01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카자흐스탄	2015-10-26	2016-05-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2016-06-10	2016-10-10	
EPA(Stepping ston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코트디부아르	2016-07-28	2016-09-03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가나	2016-07-28	2016-12-15	잠정 발효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캐나다	2016-10-30	2017-09-21	잠정 발효
PDCA(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greement)	쿠바	2016-12-12	2017-11-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8-07-17	2019-02-01	
FTA(Free Trade Agreement)	싱가포르	2018-10-19	2019-11-21	FTA 내 투자분야는 별도로 두고 추진(현재 투자보호협정 회원국별 비준 진행 중)
FTA(Free Trade Agreement)	베트남	2018-10-19	2020-08-01	2020. 2. EU 비준 및 2020. 6. 8. 베트남 비준완료. 2020. 8. 1. 부로 FTA 발효 (현재 투자보호협정 IPA는 회원국별 비준 진행 중)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Mercosur)	2019-06-28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러시아		1997-12-01	2008년 PCA 대체하는 RCA 협상 개시, 2010년 RCA 협상 중단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2002-11-18	2005-03-01	협정 현대화 추진중(2017년 11월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합의완료 2021.10 EU 의회, 이사회 거쳐 최종 승인계획) 협상 2021.5
TCA(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영국	2020-12-24	2021-05-01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솔로몬 제도(Pacific)	2011-05-01	2022-05-17	

〈자료원 : EU 집행위〉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	--------	--------	----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미국	협상 중, 직전협상: 2022년 5월	
FTA(Free Trade Agreement)	ASEAN	2009년 3월 다자간 협상 잠정 중단함의. 2009년 12월 EU-ASEAN 개별회원국 간 양자협정 추진계획 발표. 양자협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협정 가능성 타진 중	
FTA(Free Trade Agreement)	말레이시아	협상 잠정보류, 직전협상: 2012년 4월	
FTA(Free Trade Agreement)	태국	협상 중단, 직전협상: 2014년 5월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네시아	협상 중, 직전협상: 2021년 11월	
FTA(Free Trade Agreement)	필리핀	협상 중, 직전협상: 2017년 2월	
IPA(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미얀마	협상 중, 직전협상: 2016년 12월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	협상 중, 직전협상 2022년 6월	2021년5월8일 재개 합의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2018년 4월 2일 무역부분 업그레이드 협정 원칙적합의 (Agreement in principle) 도달	기존 협정 발효일: 2000년 10월 1일
FTA(Free Trade Agreement)	호주	협상 중, 직전 협상 2022년 2월	
FTA(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협상 완료, 직전 협상 2022년 6월	
EU-China investment agreement	중국	2020년12월30일 타결 후 비준 추진중이었으나 중국의 인권문제로 잠정 중단(2021.5-)	
Update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제르바이잔	협상개시: 2017년 2월	
Update of AA(Association Agreement)	튀니지	DCFTA 추진 위한 업데이트 (협상 개시: 2013년 10월 12일) *DCFTA: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기존 협정 발효일: 1998년 3월 1일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네시아	협상 중, 직전 협상 2021년 3월	
FTA(Free Trade Agreement)	호주	협상 중, 직전 협상 2021년 3월	
FTA(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협상 중, 직전 협상 2021년 3월	
EPCA(Enhanced Par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	키르기스스탄	협상완료, 직전협상 2019년 6월	EU-키르기스스탄 EPCA 협상완료, 향후 이사회 채택 이후 발효 예정 (2022년 내)
EPCA(Enhanced Par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	우즈베키스탄	협상완료, 직전협상 2022년 6월	

〈자료원 : EU 집행위〉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물개 제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4대 분쟁광물(2021년 1월 1일부)

콩고 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등 4대 광물 수입이 2021년 1월 1일부로 금지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물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 등이 발생해 수입금지 통해 유혈분쟁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17년 관련 규정(No. 2017/821)을 제정하고 2021년부터 4대 광물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해당제품에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2021년 7월 3일부)

EU의 탈 플라스틱 정책에 따라 면봉, 식기류(cutlery), 식품용기, 음료용 컵, 빨대, 풍선막대 등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2021년 7월 3일부로 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전 세계 플라스틱 연 생산량이 1950년 2백만 톤에서 2015년 3.8억 톤 등 190배 증가했으며, 전체 플라스틱의 60% 이상이 자연으로 흡수되는 상황에서 EU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소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집행위는 EU 지침 2019/904를 통해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동 지침은 2019년 7월 2일 적용되었으나 2년간의 회원국별 법령 수용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3일부로 시행된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착기, 휠로더, 스kid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때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는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RoHS, REACH, CPNP, e-Mark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프랑스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 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을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료기기, 선박 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되는 세부 품목 리스트는 아래의 EU 집행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E 적용 품목 리스트 링크 :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o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쉬워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때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 만약, 필요 때문에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시행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 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로 표시돼야 한다. 이 인식 번호 표시에 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o CE 마크 대리인 규정

2021년 7월 16일 유럽연합은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Regulation (EU) 2019/1020]을 채택했으며 앞으로 CE 마크가 있는 모든 상품은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책임자로서 유럽연합 내 거주하는 유럽연합 대리인을 필요로 한다. 유럽연합 내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유럽연합 내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유럽연합 내 수입업체, 유럽연합 내 대리인, 유럽연합 내 배송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이며, 대리인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 상품의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 수집 후 유럽연합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유럽연합 표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별도의 문서* 제공

*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DoC), 기술문서(테스트보고서, 안전 인증서 등)

- 상품이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관련 기관에 보고

-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상품의 규정 미 준수 문제 해결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 0.1%

- 수은 : 0.1%

- 육가크롬 :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 0.1%

- 카드뮴 :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 0.1%(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중)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화학물질 관리 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 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 각각의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고분자 내 2% 이상 포함되어 있고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또는 고분자를 함유한 조제 제품 내 각 성분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 사용자, 물질 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사전등록: 사전 등록은 등록 절차의 하나로, 사전등록을 해야만 함량과 물질 특성에 따라 3년 6개월~11년까지 본 등록이 유예된다.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이 마감되었으나,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경우, 최초 수출 후 6개월 이내에 사전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사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톤수 별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 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 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 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사항 : 물질 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 정보 등과 함께 기술 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 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 <http://iuclid.eu>
- 평가 : 서류 검증 및 질적 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 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 체크에 불과하다. 유럽물질화학청(ECHA :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등록된 물질 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 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 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 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 지원센터 연락처 :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 승인 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 받게 된다. 물질 등록 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날짜로 지정된다.
- 등록 물질 공표 :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EU 수출에 흔히 사용되는 CE 인증의 경우 화장품 제품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CE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 CPNP 제도는 2013년 7월 11일부로 시행중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뉜다.

- RP 지정 및 라벨링 :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하고 필요서류를 RP에 제출하는 한편, EU 기준에 맞는 라벨 작성
- 성분 및 라벨 검토 :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 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

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실질적인 CPNP 등록 과정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이 사전 지정한 RP(또는 인증 대행사)로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 표를 제출하면 RP가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 후 가격 견적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해준다. 이후, 수출기업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 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작성한다. 또한,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기업과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친 후 승인한다. 이후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시스템 내 등록을 마친다.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품별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제품정보, 제품 시험성적서, 성분 안전성 데이터, 제조번호, 성분표, 원산국명, 제품 출시되는 EU 회원국 명, 동물실험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안정성 및 적합성 테스트, IFRA 증명서 등이 있다. 제출되는 서류의 언어는 영어 또는 진출하려는 EU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EU 1개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다만,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개별 표기돼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라벨을 작성할 때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 효능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어 여러 효과(진정성, 지속성, 주름개선 등)를 제품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CPNP 등록이 가능하므로, 증빙하기 힘든 문구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CPNP 등록을 완료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만일 서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5) e-Mark

e-Mark는 자동차 산업분야에 관련된 EU 적합성 준수 마크로 유럽시장에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 검사 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마킹과 달리, EU 각국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시험 후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ISO 9000을 획득한 제조기업은 생산 절차의 적합성이 인정돼 기관의 면밀한 검사 없이 형식승인 획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안전한 제품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공장시설 및 생산절차 등 현장 검사가 시행될 수 있다. 또한, 형식 승인이 완료되면 인증 마크와 번호를 부여 받게 되는데, 마크에는 EU 개별국의 고유 번호가 매겨진다. 1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다른 회원국의 별도 승인 없이도 역내 자유로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 EU 회원국 고유번호 예시 :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4=네덜란드, 5=스웨덴, 6=벨기에, 9=스페인, 11=영국, 12=오스트리아, 13=룩셈부르크, 17=핀란드, 18=덴마크, 21=포르투갈, 23=그리스 등

6) 보조금

인증제도 이외에도 EU는 반덤핑 및 반 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역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 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역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들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기업인수, 공공조달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행 제도로는 이들 기업의 규제가 힘들어 보다 강화된 규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번 백서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규제수단을 도입하며 해당 이해관계자 의견을 2020년 9월 23일까지 수렴했다. 집행위 차원의 내부적 평가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2021년 5월 집행위는 기업인수와 공공조달 입찰 시 EU 역외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정황이 발견될 시 집행위에 이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하였다.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전 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방안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 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판매 등 경쟁 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자산매각?투자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피인수기업의 EU 지역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이거나 EU 역외 지역 인수기업의 투

자자금이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인수건에 대해 EU 역외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공공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조달이나 기금마련(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 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 제출 요구. 부당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이 불가하며 펀딩 프로젝트 참여 역시 배제. EU 역외 정부가 EU 지역 내 2억5천만 유로 이상의 공공조달 입찰 건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7)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초안을 발표했으며, 2022년 3월 이사회는 일반적 접근을 채택하고 2022년 6월 의회에서 수정안을 채택한다. 이사회와 집행위의 입장은 유사하나, 의회는 과도기 / 무상 할당 폐지 시기 / 배출 범위 관련 집행위와 입장 차가 있으며, 2022년 10월 삼자 협의의 진행이 예상된다. 향후 삼자 협의를 통해 규정(안) 내용을 확정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CBAM은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를 구매,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할 당국에 승인 받은 수입업자가 제품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 후 해당 수입에 대해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당국에 신고·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안의 적용대상 제품은 배출량이 큰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이며 유럽의회는 유기화합물,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를 추가로 제안했다. 적용대상 제품 HS 코드 별 세부 품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EU의 CBAM 적용 대상품목 (자료: EU 집행위)

분야	HS코드	HS 세부코드
시멘트(4개)	25	252310, 252321, 252329, 252390
전력(1개)	27	271600
비료(5개)	28, 31	280800, 2814, 283421, 3102, 3105(HS 310560은 제외)
철강(38개)	72	7201, 7203, 7205, 7206, 7207,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8, 7219, 7220, 7221, 7222, 7223, 7224, 7225, 7226, 7227, 7228, 7229 73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
알루미늄(8개)	76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한편, EU의 이 같은 탄소국경조정제 도입 추진에 대해 자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우려한 여러 국가들이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러시아는 EU 탄소국경조정제가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만약 도입하는 경우 유럽의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은 EU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역시 유럽 탄소국경조정제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업계는 EU가 테스트 차원에서 시멘트 등 산업 파급력이 다소 적은 분야를 선두로 적용한 후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누출이 큰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소국경제가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역외국 수출 기업은 물론 중국, 인도 등 탄소배출 기준이 적은 국가에서 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들여와 역내에서 가공·판매했던 EU 기업들 역시 영향을 받게 돼, 역내 공급망(GVC)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EU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8) EU 공급망실사 지침 (Supply Chain Due Diligence Directive)

2020년 4월 법안 수립 계획을 밝힌 뒤, 2022년 2월 집행위 초안을 발표했다.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EU 역내외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심, 인권환경 관련 공급망 내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여 예방완화피해 구제 조치 시행의 의무화다. 이번 지침의 대상으로는 고용인원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역내외 대기업, 고위험 산업군(섬유, 광물, 농업, 임업, 수산업) 중견기업으로 협력사와 실사준수계약 체결 등을 통해 전 공급망에 걸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및 완화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실사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서 또는 성명서를 기업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EU 회원국은 감독기구를 지정하여 실사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집행위는 유럽 감독기구 연합회(European Network of Supervisory Authorities)를 설립하여 감독기구 간의 협력 및 조사, 제재 등에 대한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원국 별 국내법 입법 과정에서, 위반시 제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수준이 상이할 전망으로 입법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TBT

기술 장벽은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EU는 어린아이의 신체와 직접 닿는 장난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년간 거의 개정 없이 유지되던 EU 장난감 안전 규제는 2009년 신안전지침(2009/48/EC)이 공표된 후로 지속 심화하고 있다. 특히 장난감 내 함유되는 화학성분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2020년 11월까지 총 14건이 개정), 가장 최근 변경된 화학물질은 2019년 11월 알루미늄(Aluminium) 및 페놀(Phenol)에 관한 내용이다.

○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용

- 2012년 3월, Cadmium 허용치(migration limits) 조정
- 2013년 7월,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TCEP, TCPP, TDCP, BPA 함량 제한
- 2014년 6월,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2015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Formamide, BIT 및 CMI, MI 함량 제한
- 2017년 3월 Lead 허용치 조정 - 2017년 5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및 BPA 함량 제한
- 2018년 5월, Chromium VI 함량 제한
- 2019년 11월, Aluminium 허용치 조정
- 2019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함량 제한 등

2)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 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 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물질 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 위험성 물질 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올렸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물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 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 15, 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과 컵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향후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 S(BPS)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BPS 물질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조기업의 BPS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 같은 추세로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 기업의 예의주시가 요구된다.

3)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2020년 2월 27일부로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EU는 피부와 직접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페니페놀 물질의 최대 허용 농도 제한(11월)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 사용을 금지(7월)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제한이 강화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사용금지 물질)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염색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물질의 경우, 지금까지 마스크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됐다. 유럽 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는 상기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해당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산염 및 염산염(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의 경우,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 구조가 같으므로 이들도 같이 금지해야 하며, 금지 제품에 염색약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크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해당 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 (허용량 제한) 클림바졸(Climbazole)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클림바졸의 경우,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됐으나 과학위원회는 이번 평가 후, 기존 농도로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0.2~0.5% 이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로션, 크림, 발 전용 제품 : 최대 0.2%까지
- 샴푸는 0.5%까지만 안전(비듬 샴푸의 경우에는 2%까지 허용)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 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 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된다. 최근 역내 K-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보다 주시해 우리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

폐기물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완제품에 포함된 고위험 우려 물질에 대한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는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가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신고제의 목적은 폐기물 처리자로 하여금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위험 우려 물질(SVHC)이 포함된 완제품이 시장에서 점차 퇴출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고위험 우려 물질을 중량 대비 0.1% 이상 함유한 완제품을 공급하는 EU 내 모든 기업은 제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SCIP 신고를 위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020년 10월 28일 우려 물질을 함유한 제품 정보를 공개하는 SCIP데이터베이스를 개설했다. 따라서 신고된 물질은 다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echa.europa.eu/de/scip>)

5)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시행 (예정)

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 Regulation(EU)2017/746]이 2017년 5월25일 발효된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5.26일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기존 지침(IVDD: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대비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유럽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없이 자가 적합성 선언 후 시판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 등급 분류에 따라 유럽 공인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수행이 필요하다. (체외진단기기 유형 분류 시스템을 위험 등급에 따라, 가장 낮은 Class A에서 가장 높은 Class D로 분류, Class A 등급을 제외하고는 지정 인증기관으로부터 필수 인증 취득 필요함) 관련해 앞으로도 EU에서 판매 예정인 체외진단기기들은 엄격한 임상적 증거 제출하고 시판 뒤에도 사후 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관련업체는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타

◦ EU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수입제한 물량) 내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해당 조치는 미국이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아시아의 철강이 유럽 시장으로 몰릴 것을 우려하여,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26개 철강재 및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치이다.

지난 2020년 7월 01일부터 모든 국별 쿼터를 연간에서 분기별로 변경하고, 대규모 철강 수출자의 잔여 쿼터 접근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개정안이 발효 되었고, 해당 개정안에 따른 3차연도 세이프가드는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세이프가드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고, 또한 EU 12개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연장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역내 생산, 소비 및 고용 등, 철강 수입으로 업계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나, 2021년 6월 10일 EU 집행위는 WTO에 역외국 철강재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3년(2021.07.01~2024.06.30) 더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집행위는 현재 방식과 동일한 총 26개 품목 내 쿼터제를 시행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연도별 3% 중량 방식 역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 인스턴트 라면류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검역 강화

아시아에서 수입된 인스턴트 라면 및 식물 성분 함유 건강보조식품에서 에틸렌옥사이드 오염 가능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EU 집행위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규정 (EU) 2019/1793를 개정하여 제 3국 수입 식품 검역을 강화하였다. 개정된 규정 (EU) 2021/2246에 따라 부속서에 등재된 규제 대상 품목의 EU 수출을 위해서는, 제품의 선적 전 정밀검사를 통해 EU의 최대 허용 잔류 기준을 준수했다는 시험성적서와 검사 공식증명서를 통관 시 제출해야만 한다. 시험성적서는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산지소, 한국분석기술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식증명서의 경우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 EU) 2021/2246 부속서 II 에 등재된 한국 대상 품목 및 수입 요건

- 규제 대상품목(CN 코드): 식물 성분 함유 건강보조식품(ex 1302, 2106), 인스턴트 라면(1902 30 10)

- 수입 요건

1) 공식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에틸렌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수준 준수 여부 검사 증명서 제출

2) 검사증명서: EU 공식증명서(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행), EO 시험성적서(국내 지정 공식검사기관 발행)

* CN 코드: CN Code는 HS code 공통 6단위 하에 2단위를 추가하여 사용하는 코드

** 에틸렌옥사이드 검역 강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해외시장 뉴스 참고: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pNttSn=193125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크로아티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이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EU 관세는 크게 협정 특혜관세,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관세, 최혜국 관세(MFN; most-favoured-nation)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협정 특혜관세는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로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특정 세율이 적용되며(예시 : 한-EU FTA로 0% 무관세 수출), 최혜국 관세는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전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 (참고) 일반특혜관세제도 분야별 해당국가 리스트(2021년 5월 12일 확인 기준) :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19/may/tradoc_157889.pdf

현재 GSP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EU 집행위는 만료를 앞두고 2021년 9월 22일 개정안을 제안했다. 특히 집행위는 GSP 참여국이 인권·환경보호·거버넌스와 함께 이민문제 해결에 협력할 것을 개정안에을 통해 제안하고 있다. 또한 GSP 수혜국이 준수해야 할 기존 27개 협약중 6개 협약이 추가됐으며, 특혜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특혜 철회절차를 18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EU 의회와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후 승인이 되면 최종 채택 될 예정이다.

1) 관세율

EU 공동 관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마련한 복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 방식에 의해 분류된다. CN은 HS 품목 분류표와 CN 소호(sub-heading) 분류, 추가적인 부(Section) 또는 관련된 챕터(Chapter)의 주(Note) 등 보충규정이 포함되며, 이사회 규정 EEC 2658/87 부속서 내에서 명시된다. CN 분류체계는 8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는데, 처음 6자리 숫자는 HS 코드와 동일하고 나머지 7,8번째 숫자는 EU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세부적 분류체계가 더해진다. 이 외에도, CN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EU 차원의 세부적 분류목적을 위해, CN 8자리에 2자리를 추가한 10자리 형태의 통합관세율(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 존재한다. Taric은 특혜관세, 관세할당 등 관세율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비롯해 과일과 채소의 표준 수입가격 및 단위가격, 농산물 구성요소, 특정물품의 수량 제한,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제, 수출입 신고서에 사용되는 코드 등 기타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상이)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2021년 5월 기준, 적용되고 있는 국별 부가가치세(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electronic-services/vat-rates_en

3) 관세동맹을 위한 액션플랜

2020년 9월 28일, EU 집행위는 현행 관세 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해 보다 통합된 관세동맹을 위한 관세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회원국간 관세 행정시스템 수준이 다소 상이해, 시스템이 비교적 취약한 회원국 내 불법제품 유입 및 관세법 위반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서도 보다 탄력적인 관세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회원국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세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역내 수입 관세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행위가 추진 예정인 관세동맹 액션플랜은 크게 전자상거래 관리, 법규준수, 리스크 관리, 관세행정 협력 등 4개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2024년 1월까지 전자상거래 기업의 VAT 납부여부에 대한 관세당국의 접근성을 확대해 수입물품의 판매처 추적, 저가신고 차단 등 통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관세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공동관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EU 차원의 공동된 제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리스크 관리 분야의 경우, 현행 EU의 수입물품 전자신고 관리시스템(ICS2; Import Control System)을 2024년까지 개선해 회원국간 보다 통일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의료품목의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2022년 1월 1일, EU 집행위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품목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관세·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치를 3차례 연장해 2022년 6월 30일까지 시행했다.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심전계, 호흡기, 진단시약 등 총 45종의 의료품목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 해주는 해당 조치는 현재 EU 차원에서는 더 이상의 연장 없이 중단 되었으며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포르투갈, 벨기에 등 5개 회원국에서만 2022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 (참고) 면제 품목 목록: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system/files/2022-01/EU%20Indicative%20List%20Decision%20Covid19-C2020_491%20-%202011%20Jan%202022%20.pdf

◦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개정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역내 기업에게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하는 EU 전자상거래 VAT 개정법을 2020년 2월 채택해, 2021년 7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동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IOSS(관부가세 신고 간소화 시스템) 플랫폼 신규 도입, 역외 수입 상품의 VAT 면제 조건 폐지, 부가세 준수 책임 이전 (판매자→플랫폼 사업자) 등이다.

이로써 EU는 기존 22유로 미만 저가 제품에 적용돼왔던 VAT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를 부과하고 있다. 대신 소규모 전자 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VAT 규칙을 도입해 역외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150유로 미만의 저가 화물의 경우 IOSS (Import One Stop Shop)에 등록된 사업자, 운송 업체 및 세관 대리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VAT 신고 및 비용을 납부 할 수 있다. 하지만 업체가 IOSS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VAT 및 세관 비용이 청구 될 수 있다.

◦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 중단 제안

2022년 4월 27일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우크라이나의 생산·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년간 모든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 중단을 제안 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EU로 수입 시 쿼터제가 적용되는 농산물과, DCFTA 체결로 단계적 관세 적 관세 철폐 중에 있던 비료, 알루미늄, 자동차 등 모든 공산품에 해당 된다. 또한 EU 내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우크라이나 면제 및 우크라이나에 부과된 기존 반덤핑 관세 조치 면제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제안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경제적으로 지원 하며, 동시에 역내 식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유럽 의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22년 5월 30일 채택, 2023년 6월 5일 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EU 2022/870).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CLASS)을 2020년 5월 구축해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주요 무역항: 동유럽의 화물 운송은 현재 슬로베니아 코퍼항, 크로아티아의 리예카항과 플로체항, 이태리의 트리에스테항 4개가 있으며 한국에서 크로아티아로 보내지는 화물의 대부분은 슬로베니아의 코퍼항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제1의 항구인 리예카항을 통한 물류도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규모면에서는 아직까지 코퍼항이 절대적으로 많다. 참고로 슬로베니아 코퍼항은 크로아티아 수출뿐 우리나라의 동유럽 공장에 필요한 많은 제품들도 수입되어 내륙 운송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물류기업이 코퍼항에 진출하여 영업도 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리예카항은 코퍼항을 의식하여 처리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 확장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코퍼항에서 처리하는 물동량이 많아짐에 따라 일부 리예카항으로 옮기는 기업들도 생기고 있다. 크로아티아 해안 남쪽의 플로체 항은 남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입국 물량이 이용되지만 그 양은 제한적이어서 이용을 위해서는 물류회사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 현지 진출 물류 업체에 의하면 연간 취급하는 물동량의 경우 코퍼항이 100만 TEU 내외로 현재 거의 처리 가능 최대 물량을 핸들링 하고 있으며 리예카항은 20~30만 TEU로 정도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수출입을 위한 크로아티아 공항은 대부분 자그레브 국제공항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크로아티아 주요 도시에 국제공항이 있지만 대부분 관광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화물 운송은 많이 않다. 참고로 크로아티아 공항 화물의 경우 고가의 제품이나 샘플 운송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편이다.

◦ 물동량: 크로아티아의 2021년 공항 물동량은 86,000톤이며 전년대비 58.2%가 증가했다. 승객 이용수는 4.7백만명으로 전년대비 122% 늘었다. 제2 국제공항인 스플리트 공항이 자그레브 공항을 앞서 전년대비 136.5%가 증가한 1.6백만명을 기록했으며 자그레브 공항 이용 승객은 1.4백만명으로 집계 되었다. 참고로 스플리트(Split) 공항의 경우 항공 이용객수는 자그레브 공항을 앞섰지만 물동량은 적은 편이다.

3) 유의사항

수출에 필요한 인증 서류를 현지 바이어 및 필요시 세관에 사전 점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제품과 인증서가 맞지 않아 다시 화물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발 화물운송비의 상승으로 당초 예상하던 가격이나 기간내 물건을 보내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 해운 운송회사 등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4) 기타 참고사항

현재 부산-코퍼항/리예카 간 컨테이너 20ft 운임은 8,000\$이며 40ft는 12,000\$\$로 코로나 이전 20ft 컨테이너 3,000\$, 40ft 컨테이너 큰 폭으로 오른 상태이지만 조금씩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약식통관(Simplified Import Entry)

제품가치가 10달러 미만인 품목으로 세금 면제를 받았던 약식통관은 2021년 7월1일부로 폐지되어 모든 품목에 관련 세금이 부여된다.

2) 정식통관(Standard Import Entry)

정식통관 품목은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금액과는 별개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25%)가 부과되며, 일부 특정 품목(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통관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 관세 신고서
- 원산지 증명서
- 선적 서류
- 상업 송장
- 포장 목록
- 과세
- 측정서(필요 시)
- 보험 증서 (필요 시)
- VAT 지불 영수증

크로아티아의 경우 제품 수입 시,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축소신고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송금 확인서가 크로아티아 중앙은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세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수출업체의 계좌에 더 많은 금액을 송부할 시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목적항에 화물이 도착 후, 선사에 따라 목적항에 7~14일 정도 보세지역에 무료 보관할 수 있으며, 도착일부터 1일씩 계산되고 통관 시 2~3일이 소요되므로 추가 비용을 고려해 보세지역 무료 보관 가능 기간 이내에 통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민국 관세청은 수출통관절차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웹사이트에서 관세행정 안내 → 수출 → '수출통관이란'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 크로아티아 통관절차 흐름

운송(Transit) → 검역 및 역내처리(Inward Processing Under Suspension System) → 환급 세제 및 역내처리(Inward Processing Under Drawback System) → 세관 보관(Customs Warehousing (five categories)) → 세관 검사장 처리(Processing Under Customs Control) → 가통관(Temporary Admission) → 역외 처리(Outward Processing) → 수출(Exportation)

3) 임시통관(Temporary Import Entry)

전시회 출품 등의 목적으로 들여와 다시 반출할 목적의 품목은 임시통관이 이뤄진다. 기본 임시통관 기간은 1개월이며, 1개월씩 최장 2년 까지 연장할 수 있다.

통관 시 유의사항

○ 물품검사

수입 면장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한 후 세관에 제출 시 물품 검사 여부를 세관에서 결정한다. 물품 검사의 경우 대부분 수량에 대한 검사가 대부분이며, 검사 여부도 세관원의 판단에 따른다. 크로아티아 관세청에서 선정한 '과세 평가 대상'의 제품(주요 인증제도 참조)은 물품 검사가 주로 이루어지며, 그 외의 경우는 문서 상 축소신고 가능성이 있는 제품만 선별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진다. 통관 시 물품 검사를 할 경우 전체 통관 소요기간은 약 3일이 소요된다. 55개 항목의 제품은 국립 과세 평가 사무소에서 지정한 검사소에서 물품 검사 수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구의 경우 지정 검사소의 한 곳인 Sumarski Fakultet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특히 샘플 배송(EMS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관 검사를 하기 때문에 물품과 함께 반드시 인보이스를 첨부해야 한다. 통상 우리 기업들이

무상 샘플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상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인보이스가 필요하다. 인보이스가 없는 경우 통관원이 자의적으로 해당 물품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샘플 대금을 제품의 원금액대로 기재할 경우 바이어가 해당 금액에 대한 통관세를 반드시 납부해야한다. 따라서 바이어와 사전에 샘플금액을 논의한 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크로아티아 관세청 사이트
- <https://carina.gov.hr/en>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HZ Cargo

주소	Heinzlova 51, 10 000 Zagreb
전화번호	+385-1-4577-576
이메일	info@hzcargo.hr
홈페이지	http://www.hzcargo.hr/
비고	철도운송

◦ Lagermax Zagreb d.o.o.

주소	Zagorske Magistrale 14, 10 000 Zagreb
전화번호	+385-1-3340-450
이메일	lagermax@lagermax.hr
홈페이지	http://www.lagermax.hr

◦ DHL International d.o.o.

주소	Utinjska 40, 10 000 Zagreb
전화번호	+385-1-6397-503
이메일	info.hr@dhl.com
홈페이지	http://www.dhl.hr

◦ Atlantska plovidba d.d.

주소	Dr. Ante Starevia 24, 20000 Dubrovnik, Hrvatska, P.P. 192
전화번호	+385-20-352-333
이메일	atlant@atlant.hr

홈페이지	http://www.atlant.hr/
비고	두브로브니크를 거점으로 운영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령

- 크로아티아는 2000년 7월 투자진흥법(The Investment Promotion Law)을 제정하고 시행 중이며, 본 투자 진흥법은 외국인 직접투자에도 내국인과 차별 없이 적용하고 있다.
 - 제도적으로 외국인투자자는 단독투자, 지분투자, 계약에 의한 합작투자 등 그 형태와 관계없이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할 수 있으며 내국인과 동등한 법인자격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이익배당금 또는 기업 청산 후 투자자본 과실송금을 100% 보장하고 있다.
- 2006년에는 투자인센티브법(Investment Incentive Act)을 도입하고 2009년에도 건설조건법(Terms of Construction Act)을 통해 투자 유인을 규정해왔으나, 이 두 법 모두 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 2012년 9월에는 기존 투자진흥법 및 투자인센티브법을 개정하여 새롭게 투자진흥과 투자환경개선에 관한 법률(Investment Promotion and Enhancement of Investment Environment)을 발표하였다.
 - 제조업, 기술혁신분야, 비즈니스 지원 분야,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보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장비, 기술을 도입하거나, 고용을 확대하고, 직원 역량을 강화하거나, 제품생산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경우 투자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 2013년 11월 14일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법(the Act on Strategic Investments of the Republic of Croatia)이 새로이 발효됐다.
 - 크로아티아 정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유재산의 처리를 포함한 신속한 행정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법을 도입했다.
 - 지원분야는 에너지, 관광, 교통, 통신, 환경보호, 농업 및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지정하였으며, 이는 단순 제조업 투자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성 투자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최소 투자규모는 전체적으로 2천만 유로로 정해져 있으며, EU 펀드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가 1천만 유로, 그리고 도서 지역 관련 프로젝트나 농업 분야에서는 3백만 유로의 최저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 동 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특정 투자 사안에 대해서 전략적 투자자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법에서는 동 자격 부여에 국내와 해외투자자를 막론하고 차별이 없도록 보장하고 있다.
- 2015년 9월 18일에 보다 광범위한 투자인센티브를 포함한 투자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이 새롭게 발효됐다.
 - 신규설비 혹은 기술 도입, 실업을 해소 기여, 지역 균형발전,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가 신설되었다.
- 2018년 개정된 투자촉진법에는 ICT 분야에 대해 투자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기존 최소 투자 15만유로 기업에서 5만유로 투자기업으로 낮추었으며 정부 지정 비활성 부지에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을 신설하였다.
- 2021년 개정된 투자진흥법(The Investment Promotion Law)에서는 2013년 소개되었던 국가의 중요 프로젝트인 전략적 프로젝트 투자 관련, 프로젝트의 선정, 평가, 실행 등의 세부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최소 투자 규모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천만유로로 낮아졌다.

2) 법인 설립 절차

- 외국인 직접 투자 서비스: HITRO.hr

- 크로아티아 법인설립은 크로아티아 전국에 60개 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한 기업지원센터(HITRO)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 HITRO에서는 신청 후 8일 이내에 회사설립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고, 온라인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 HITRO HR서비스: FINA(Croatian Financial Agency)와 연계하여 기업등록을 용이하게 하고 신속한 회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크로아티아 전자정부추진사업의 하나임. 특히 외국투자기업이 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업등록기간이 4일로 단축될 수 있다고 한다.
- (HITRO TR서비스 사이트: <http://www.hitro.hr/Default.aspx?sec=18>)
- o 법인 설립 절차 6단계
 - 회사명 등록가능 여부 확인 : 기업지원센터(HITRO)에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명의 등록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
 - 서류 공증: 공증 사무소로부터 회사설립 관련 서류에 대한 공증
 - 법원 등록 서류 제출: 법인등록신청서 및 모든 관련 서류를 HITRO에 제출
 - 수입인지 및 등록 공고 비용으로 600달러 정도가 소요되며,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회사 등록 및 법인등록 번호(OIB) 발급
 - 회사 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 법원 등록 이후 회사 인증(Company Seal)을 별도로 만들며, 업종 분류까지 처리되면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동 계좌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함.
 - 국세청 등록 : 법인세, 부가세 납부를 위한 회사 등록
 - 연금 및 의료보험 가입: 연금 및 의료보험 공단에 직원 등록 및 가입, 외국인의 경우 거주 허가서가 필요함.

투자인센티브

크로아티아 내 투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o 소기업(Microenterprise): 최소 3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및 5만 유로 투자
- o 대중소기업: 최소 5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및 최소 투자금액 15만 유로
- o ICT 기업 : 최소 10개 신규일자리 창출 및 최소 투자금액 5만 유로

1) 법인세 감면

- o 크로아티아의 법인세율은 18%이나, 투자금액 및 일자리 창출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 o 감면 법인세율 50%(감면기간 10년, 단, 소기업은 5년)
 - 투자금액 : 15만~1백만 유로 이하
 - 단, 소기업 및 ICT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센터에 한해 5만~1백만 유로 이하
 - 신규 창출 일자리 : 5명(중소기업 3년, 대기업은 5년 이상 고용해야 함)
 - 단, 소기업(3) ICT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센터(10) 적용
- o 감면 법인세율 75%(감면기간 10년)
 - 투자금액 : 1~3백만 유로
 - 신규 창출 일자리 : 10명(중소기업 3년, 대기업은 5년 이상 고용해야 함)
- o 감면 법인세율 100%(감면기간 10년)
 - 투자금액 : 3백만 유로 이상
 - 신규 창출 일자리 : 15명(중소기업 3년, 대기업은 5년 이상 고용해야 함)

2) 고용보조금

- o 고용보조금은 소재지역(카운티)의 실업률과 피고용인의 직전 실업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산업분야에 따라 25%, 50%의 추가 혜택이 부여된다.
- o 기본 고용보조금 비율은 4%(1,200유로 한도)에서 30%(9천 유로 한도)이며 여기서 산업분야에 따라 25% 혹은 50%의 추가 보조금이 제공된다.
- 자세한 세부 내역은 (<http://investcroatia.gov.hr/en/incentives/incentive-measures-for-investment-projec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투자금액 5백만 유로 이상 및 창출 일자리 50개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금액의 10%~20%의 현금보조가 제공되며 이 역시 투자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보조비율이 결정된다.

3) 프로젝트 보조금

○ 5백만 유로 이상의 투자로 5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에 대해서 10~20%의 현금보조 혜택을 준다. 최대 금액은 50만 ~1백만 유로이며, 투자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보조금 액수가 결정된다.

- 모든 투자가 대상은 아니며, 신규 공장, 생산 설비, 관광 설비, 기계 설비 구매 등이 지원 대상이다.

○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추가보조비율을 적용한다.

- 100, 300, 5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각각 25%, 50%, 100%의 추가보조 혜택을 준다.

○ 제조업의 생산량 증가 및 현대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지급액은 투자금액(50만 유로-100만, 100만 유로- 300만 유로, 300만 유로 이하)에 따라 3단계로 나뉘지며 생산량 증가 결과 및 장비 현대화 정도에 따라 보조금 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4) 국유부지 10년 무상대여

○ 3백만 유로 이상의 투자로 15명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3년 이내 투자지의 가치를 50%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평가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10년간 정부부지를 무상대여한다.

5) R&D 지원 인센티브

○ 크로아티아 산업분야의 R&D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R&D 및 교육분야에 대해서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제도가 마련됐다. 연구에 직접 관여하는 고용인의 임금, 연구에 필요한 재료비용, 특허 및 라이선스의 감가상각비 등의 내용에 대해 지원된다.

또한 추가 수익세는 적격비용의 국고보조금 지원 최대한도까지 감면된다.

○ 기초연구

- 국고보조금 적격비용 지원비율: 100%

- 프로젝트당 총 지원금액: 3십만 유로

- 기업의 최대한도액 4천만 유로

- 추가 수익세 감면: 200%

○ 산업연구

- 국고보조금 적격비용 지원비율: 50%(최대 80%까지)

- 프로젝트당 총 지원금액: 2십만 유로

- 기업의 최대한도액 2천만 유로

- 추가 수익세 감면: 150%

○ 실험개발

- 국고보조금 적격비용 지원비율: 25%(최대 80%까지)

- 프로젝트당 총 지원금액: 1십만 유로

- 기업의 최대한도액 1천5백만 유로

- 추가 수익세 감면: 125%

○ 응용연구 기술 타당성

- 기업규모: 대기업

- 국고보조금 적격비용 지원비율: 50%

- 프로젝트당 총 지원금액: 5만 유로

- 기업의 최대한도액 7백5십만 로
- 추가 수익세 감면: 150%

6) 투자장려분야

- 기술 혁신 및 개발, 연구 분야
- 높은 고용 및 종업원 교육
- 영업 활동의 현대화 및 개선
- 높은 가공 처리 비율로 인한 생산 증가
- 수출 증가
- 경제 성장과 고용이 전국 평균에 미달인 지역에 투자해 경제 활동 촉진
- 물류, ICT, 콜센터 등 전략적 서비스 지원 분야
- 에너지 보존
- 정보기술(IT)의 개발
- 외국 재정기관과의 협력
- 크로아티아 경제를 EU 기준에 부합하게 하는 경우

7) 과실송금

- 크로아티아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과실송금을 100% 보장하고 있다.

제한 및 금지(업종)

투자 제한 및 투자 금지 분야는 없다. 크로아티아에 설립, 등록된 크로아티아 법인은 외국인 지분율과 관계없이 법인 명의로 크로아티아 내 부동산을 아무런 제약 없이 소유 및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개인 자격일 경우, 부동산을 구매·소유할 수 없다. 부동산 이전 세금 (Transfer Tax)는 거래대금의 3%이다.

무기 및 군사장비, 철도 및 항공운송, 통신 및 체신, 출판 및 방송언론 분야는 100% 단독투자를 불허하고 합작투자만 가능하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별로 최저 설립자본금을 설정해 투자 금액을 규제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 자연인과 법인은 크로아티아 내 부동산의 소유 및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산업특구

산업특구란 크로아티아 정부, 지자체 혹은 일반 민간 소유의 부지로 비즈니스 및 산업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을 의미한다. 현재 크로아티아에는 100여 개의 산업특구가 존재하며 작게는 수만에서 크게는 수백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등 형태와 입지조건도 매우 다양하다. 적어도 이들 산업특구의 경우 토지소유 문제와 관련 법적 분쟁의 여지가 없고, 상하수도, 전력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업 입주 시 이들 구역을 잘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들 지역에 입주할 때는 정부, 지자체 등을 접촉해 어떠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클러스터 조성

크로아티아 경제부는 산업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클러스터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6월 기준, 전국적으로 흩어진 12개의 경쟁클러스터(Competitive Cluster)가 구성돼 있으며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다.

- 식품가공 클러스터(Food Processing Industry)
- 목재가공 클러스터(Wood Processing Industry)
- 자동차부품 클러스터(Automotive Industry)
- 창의/문화 산업 클러스터(Creative and Cultural Industry)
- 섬유/피혁/신발 클러스터(Textile, Leather Goods and Footwear Industry)
- 방위산업 클러스터(Defence Industry)
- 건설산업 클러스터(Construction Industry)
- 전기/기계 클러스터(Electrical and Mechanical Machinery Industry & Technology)
- 의료산업 클러스터(Medical Industry)
- 화학, 플라스틱 고무 클러스터(Chemical, Plastics, and Rubber)
- ICT 클러스터(ICT Industry)
- 해양산업 클러스터(Maritime Industry)

향후 크로아티아에 조성된 클러스터가 활기를 띠고 정상궤도에 오를 경우, 외국 클러스터와의 협력도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투자 지역 선정 시 개발된 클러스터가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에서 EU 외 제3국으로 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Port of Rijeka Free Zone: www.portauthority.hr
- Kukuljanovo Free Zone: www.ind-zone.hr
- Osijek Free Zone: www.szo.hr
- Free Zone of Port of Ploce: www.port-authority-ploce.hr(점검 중)
- Port of Split Free Zone: <https://portsplit.hr/en/port-of-split/free-zone/>

산업단지

◦ Business Park Dalmatia

규모	323,622㎡
위치	Dugopolje
임차료	프로젝트별로 상이
관할기관 및 연락처	◦ Dugopolje Projekt Ltd - 담당자: Boris Petric - 연락처: +385-21-342-781 - 이메일: boris.petric@poseidon-gp.com

◦ Industrial Park Nova Gradiska

규모	800,000㎡
위치	Trg kralja Tomislava 1, 35400 Nova Gradiska
임차료	25쿠나/㎡
관할기관 및 연락처	◦ Indestrial Park Nova Gradiska Ltd - 담당자: Ivana Voncina Toplek - 연락처: +385-3838-9910 - 이메일: info@ipng.hr

◦ Business Zone Jugo-zapad Zlatar Bistrica

규모	265,116㎡
위치	Zlata Bistrica
임차료	10 유로/㎡
관할기관 및 연락처	○ Zlata-Bistrica 관할청 - 연락처: +385-49-467-073 - 이메일: zlatar-bistrica@zlatar-bistrica.hr

○ Entrepreneurship Zone Pisarovina

규모	1,023,179㎡
위치	Pisarovina
임차료	A구역: 최소 12유로/㎡ B구역: 최소 6유로/㎡
관할기관 및 연락처	○ Pisarovina 관할청 - 담당자: Tomo Kovacic - 연락처: +385-1-6291-197 - 이메일: nacelnik@pisarovina.hr, opcina-pisarovina@zg.t-com.hr - 홈페이지: www.pisarovina.hr(영문 미지원)

<자료원 : 크로아티아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Entrepreneurship and Crafts)>

주요 지역별 여건

○ 부코바르-스리엠(Vukovar-Srijem County)

- 면적: 2,448km²
- 인구: 165,799명
- 주도: 부코바르(Vukovar)
- 기후: 대륙성 기후
- 비고: 범유럽수송망(Pan-European Corridor X 고속도로 및 철도 및 VII 다뉴베 강항) 통과
- 주요 산업: 식품공업(41.6%) 제조업(13.9%), 목재업(13%)
- 주요 기업: Same Deutz-Fahr zetelice Ltd. Zupanja, Nexus Ltd. Cerna, Adriatica Dunav Ltd. Vukovar 등

○ 비로비티차-포드라비나(Virovitica-Podravina County)

- 면적: 2,022km²
- 인구: 79,111명
- 주도: 비로비티차(Virovitica)
- 기후: 대륙성 기후
- 비고: 범유럽수송망(Pan-European Corridor X 고속도로 및 VII 드라바 강항) 통과
- 주요 산업: 제조업(40.5%), 유통업(20.6%), 농업·어업·목축업(17.2%)
- 주요 기업: TVIN Ltd., Pan Parket Ltd, Contorte Ltd. 등

○ 메디무르예(Medimurje County)

- 면적: 729km²
- 인구: 112,089명
- 주도: 차코베츠(Cakovec)
- 기후: 대륙성 기후
- 주요 산업: 제조업(53.9%), 유통업(22%), 건설업(9%)
- 주요 기업: EKO Medimurje Plc., LTH Alucast Ltd., Tehnix Ltd. 등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539.71	1171.46	1335.84	1304.03	-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724.67	200.88	167.43	235.46	-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9	1	1	71,802	1	71,206
2020	1	1	5,405	1	5,418
2021	2	1	4	2	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	1	71,802	1	71,206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운수 및 창고업	1	1	5,405	1	5,41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운수 및 창고업	2	1	4	2	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삼성전자(주) 오스트리아법인 자그레브 지사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기타 서비스업
취급분야	가전, 핸드폰 유통
모기업명	삼성전자(주)

〈자료원 :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법인은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제 3자에 대한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하다. 현지 상법상 본사 조직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조직 체이며, 이에 따라 조세 당국과의 마찰이 비교적 적고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시장 상황에 맞게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경영 의사의 신속성, 효율성 면에서 지사를 앞선다.

현지 법인의 형태는 총 3가지로 구분되는데 1)주식회사 (Joint Stock Company: d.d.) 2)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d.o.o.) 3)단순유한책임회사(Simple Limited Liability Company: j.d.o.o.)이다.

외국 투자자들은 기업의 소유권이나 지분을 자유롭게 획득할 수 있고, 외국법인의 경우 대부분 유한 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며 내국 법인의 경우에도 대부분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한다.

1) 주식회사 (Joint Stock Company: d.d.)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개념과 동일한 법인 형태를 의미하고, 기업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되며 주식의 소유자는 소유한 지분이외의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이다. 주식회사 최소 자본금은 현지화 HRK 200,000이다. 주식 발행을 위해 자본금을 납부하는 경우, 발행 주식 총액의 25%를 법원 등록 전에 납부(최소 자본금 납입)하여야 하고, 주식액면가는 최저 HRK 10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명 다음에는 기업 형태가 주식회사임을 나타내는 d.d.가 붙는다.

2)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d.o.o.)

주주는 참여 지분을 한도로 책임을 지지만 지분은 주식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최소자본금은 현지화 HRK 20,000이다. 최소 자본금의 50%에 해당하는 HRK 10,000을 법원 등록 전에 납부해야 한다. 주주 1인의 최소 지분액은 HRK 200이상 이어야 하며 기업명 다음에는 기업 형태가 법인임을 나타내는 d.o.o.가 붙는다.

3) 단순유한책임회사(Simple Limited Liability Company: J.d.o.o.)

3명 미만의 주주와 한 명의 이사회 멤버로 구성되는 회사는 간단하게 Simple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할 수 있다. 설립 최소자본금은 HRK 10이며, 법원 등록 전에 자본금이 전부 현금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주로 내국인들이 설립하는 법인 형태이다.

지사

크로아티아 법에 따라, 외국 회사와 개인사업자는 크로아티아에 지점을 설립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외국 회사가 설립한 지점과 운영은 국내회사에 의해 설립된 지점 설립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지점은 법인이 아니지만 지점이 부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고, 설립자는 부채 및 운영에 관한 아무런 책임과 권리를 갖지 않는다.

설립자는 모든 자료의 변경사항을 등록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같은 설립자가 여러 개의 지점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 설립절차는 지점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한다. 등록지원서에 어떤 지점을 설립하려는지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등록자는 여러 지점에 동일인 또는 지점마다 다른 대표를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다.

지점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점이 독립적으로 법적 권리와 의무들을 갖고 있지 않고, 설립자가 법적으로 지사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갖고 있다. 타사와 분쟁 시 지점은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지점을 소유한 회사 혹은 개인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지점은 크로아티아 회계법, 국제 회계기준 및 조세 규정에 따라 사업 관련한 모든 장부를 비치, 보관 할 의무가 있다.

◦ 설립절차

- 지사 설립에 대한 신청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회사명, 설립 본사, 지사의 모기업
- 설립회사의 사업목적과 지사의 활동내용
- 자본금 및 주식가치(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주주명부
- 지사에 파견된 직원의 이름
- 본사의 주소와 함께 관할 법정등록사무소에서 지사등록을 해야 함.
- 신청서와는 별개로 아래의 문서들을 자국 언어와 크로아티아어로 공증하여 제출해야 함.
- 모기업 정보를 포함하는 등록서류, 법정 서식, 모기업 설립 시기
- 지사 설립에 관한 모기업의 결정서류
- 모기업의 본부 소재지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는 회사 설립에 관한 증빙서(공공계약 및 회사법령) 공증서류
- 모기업의 이전 사업연도 재무보고 요약본

연락사무소

하나의 법인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된 목적은 시장조사, 모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지원 등에 한정되고, 영업활동 등은 할 수 없다(특히, 외국항공사의 대표사무소는 국제협회의 국제 조약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음). 또한, 대표사무소 자체의 책임은 없고 궁극적인 영업책임은 모기업이 부담한다. 외국단체, 국가 혹은 국제기관은 크로아티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표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대표사무소는 Foreign Party Representative Registry(with the Ministry of Economy)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후에는 바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 설립절차

- 신청서의 등록은 외국의 계약 당사자 혹은 공인된 대표에 의해 제출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기업명, 본사 및 창립자의 기업 활동
- 주크로아티아 대표사무소의 모기업
- 대표사무소 활동의 책임을 위한 기본 정보(이름, 거주지, 크로아티아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일 경우 여권과 그것을 발행한 국가)
- 대표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설명
- 대표사무소의 책임자 임명에 대한 결의(이사)
- 신청서와는 별개로 아래의 서류들도 제출되어야 함.
-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한 창립자의 결의
- 출신국가등록소의 외국인 등록 서류 혹은 모기업 본사 소재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는 회사 설립에 관한 유효 서류(법정서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 회사의 설립시기가 명확히 서류에 기재되어야 함)
- 조세납부 증빙
- * 문서는 원어와 크로아티아어 공증서류 모두 필요
- * 크로아티아 경제부는 신청서와 서류가 제출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대표사무소 등록을 마치게 됨.
-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후 EU 국가 출신 대표사무소 설립자는 대표사무소가 경제부의 외국인단체 대표 등록소(Foreign Party Representative Register of the Ministry of Economy)에 등록되어 있고, 크로아티아에서 계속 사업을 지속해나가려고 할 경우 대표사무소를 지사 혹은 법인으로 변경해야 함.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1) 투자위험도 S&P는 2022년 3월 크로아티아의 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한 BBB-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BBB-는 안정적인 신용등급이지만 투자적격 등급 구간내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이다. S&P는 코로나 이후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관광산업의 회복 등 2021년 기대치를 상회하는 GDP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 등급 유지 배경으로 설명하였다. Fitch와 Moody's 또한 투자 위험도가 낮은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2023년 쉐겐 및 유로존 가입 추진과 2013년 EU 가입 이후 교역 규모의 점진적 증가 및 각종 EU 기금을 통한 재정확충 등이 경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다만 고령인구가 많고 젊은 층의 해외 이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점은 장기적인 발전에 장애로 남아 있다. 2) 투자 애로사항 ○ 회사설립: 미국 국무부의 크로아티아 투자 환경 설명서에 따르면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행정의 비효율성 및 사법시스템의 예측 불확실성, 오랜 소송 기간 등비용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발표된 world bank의 국가별 기업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20일 내외로 OECD와 유럽 평균보다 복잡하고 많다. 또한 소요되는 시일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 언어: 회사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경우 현지인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부 영어 서류도 있지만 실질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현지어 구사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는 특히 단독으로 투자법인설립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 투자지 선택: 크로아티아의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은 지분투자자와 같은 금융 부분이며 그린필드 투자는 많지 않다. 그린필드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외국인투자전용 공단 등을 조성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토지 및 전기, 가스 등의 비용 편차가 심하고 일부는 계획 중이거나 소규모의 기업들만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어 사전 투자지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그린 필드 투자기업이 없어 투자 방법 및 장소 등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3) 분쟁해결 외국인 투자기업의 분쟁은 그 기업이 투자한 지역의 크로아티아 법원에서 진행된다. 다만 사전 중재를 위한 기관으로 HUM(Hrvatska udruga za medijaciju) 기관이 있는데 강제적인 중재권한은 없으며 양쪽의 합의 하에 중재를 요청 진행하고 있다. 기관 대표 이메일은 info@medijacija.hr 이며 홈페이지는 medijacija.hr 이다.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크로아티아 주식회사는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와 동일한 개념이며, 기업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되며 주식의 소유자는 소유한 지분 이외의 회사의 채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이다.

-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현지화 200,000쿠나(26,560유로)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주식 발행을 위해 자본금을 납부하는 경우, 발행 주식 총액의 25%를 법원 등록 전에 납부(최소 자본금 납입)하여야 하고, 주식액면가는 최저 10쿠나 이상이어야 한다.
- 기업명 다음에는 기업 형태가 주식회사임을 나타내는 d.d.가 붙는다.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
 - 주주는 참여 지분을 한도로 책임을 지지만 지분은 주식으로 표시되지 않음.
 - 최소자본금은 현지화 20,000쿠나(2,656유로)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최소 자본금의 50%에 해당하는 10,000쿠나(1,328유로)가 법원 등록 전에 납부되어야 한다.
 - 주주 1인의 최소 지분은 200쿠나 이상이어야 한다.

- 기업명 다음에는 기업 형태가 법인 형태를 나타내는 d.o.o.가 붙는다.

- o 단순유한책임회사

- 3명 미만의 주주와 한 명의 이사회 멤버로 구성되는 회사는 간단하게 단순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설립 최소자본금은 10쿠나이며, 법인 등록 전에 자본금이 전부 현금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 기업명 다음에는 유한책임회사를 뜻하는 J.d.o.o.가 붙는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직능별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자연인을 뜻하며, 자연인은 개인사업자로 등록 법원에 단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연간 총수입이 2,000,000쿠나를 초과하는 장인(기능인)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고, 연간 총수입이 15,000,000쿠나를 초과하는 장인(기능인)은 반드시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합명회사

크로아티아 합명회사는 한국의 합명회사와 동일하게 각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관해 직접 책임을 지는 데에서 대외적으로 인적 신용이 중시되고, 사원의 책임 강도는 내부적으로 사원 상호 간의 신뢰 관계를 필요로 한다. 동시에 사원의 기업 경영에 대한 참가를 강화함으로써 회사는 마치 개인기업의 공동 경영과 같은 인상을 주게 되며, 사단법인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띠게 된다. 또한, 출자 관련 재산 출자에 한하지 아니하며 노무 출자나 재산 출자도 허용된다.

- o 신청서 작성 시 필요자료

- 회사명, 등록된 사무실, 사업활동
- 파트너(이름, 거주지 즉 회사 이름 및 등록된 각 파트너 사무실 주소)
- 책임자 임명과 권한 승인서
- 법적 고지 및 조직 형태
- 정관 채택 일자
- 회사 해산 이유

- o 신청 시 필요서류

- 정관 공증
- 파트너 목록 공증
- 세금관리, 크로아티아 의료연금관리공단 인증 서류
- 설립자가 연 모든 계좌의 정보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 공증

합자회사

크로아티아 합자회사는 한국의 합자회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무한책임 사원이 있는 점은 합명회사와 같으나, 회사 채권자에 대해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연대해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사원이 있는 점이 합명회사와는 다르다. 유한책임 사원은 유한의 책임을 지는데 불과한 반면, 출자는 재산 출자에만 한하고 회사의 업무 진행 대표로는 참여하지 않는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자료 및 서류는 합명회사와 같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o Law Firm Kallay & Partneri d.o.o.

전화번호	+385-1-4811-959
주소	Ilica 1A/III, 10000 Zagreb, Croatia
홈페이지	http://www.kallay-partneri.hr/en/
이메일	info@kallay-partneri.hr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 Law Firm Kunstek/Halle/Simac

전화번호	+385-1-6935-600
주소	Ilica 31, 10000 Zagreb, Croatia
홈페이지	http://www.khs.hr/en/
이메일	office@khs.hr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 KPMG Croatia d.o.o.

전화번호	+385-1-5390-000
주소	Eurotower, Ivana Lucica 2s/17, 10000 Zagreb
홈페이지	https://home.kpmg.com/hr/en/home/misc/contact-kpmg.html
이메일	info@kpmg.hr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 EY Croatia

전화번호	+385-1-5800-800
주소	Radnicka cesta 50, 10000 Zagreb
홈페이지	https://www.ey.com/hr/en
이메일	ey@hr.ey.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 H.T. d.o.o.

전화번호	+385-21-612-889
------	-----------------

주소	Kopilica 62, 21000 Split, Croatia
홈페이지	http://www.htdoo.hr/
이메일	office@htdoo.hr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스플리트 소재

<자료원 : 회계법인 검색(<http://www.knjigovodstveni-servisi.net/>), 법무법인 검색(<http://www.hok-cba.hr/hr/imenik>)>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크로아티아는 공식적으로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EU에 가입하면서 유로존 국가와의 상품, 인적 교류가 활발해져 유로화에 대한 쿠나화의 가치 안정은 크로아티아 외환제도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해 쿠나와-유로화 환율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사실상 유로화에 대한 준-페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크로아티아 중앙은행은 유로존 가입을 앞두고 2019년 7월 4일에 유럽환율조정장치 2(Exchange Rate Mechanism 2)에 가입신청을 하여 2020년 승인되었다. 승인으로 인한 유로화와 쿠나화의 기준비율은 1유로에 7.53450 쿠나로 결정되었으며 환율 변동폭은 기준대비 상하 15% 이내로 정해졌다. 크로아티아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1월부 유로존 가입 대비를 위해 제품 판매가에 현지화인 쿠나와 유로화를 병기하여 기록할 계획에 있다.

외국인 및 법인은 국내 은행에서 외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크로아티아 국민 역시 해외에서 외화계좌를 개설하는 데에 제약이 없다. 크로아티아 외환관리정책의 기본법은 외환법(The Foreign Exchange Act)으로, 영문 번역본(비공식)은 크로아티아 중앙은행(Hrvatska Narodna Banka)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최근 크로아티아 시중 은행에서 외국인의 계좌 개설 시, 고용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일반 미고용 외국인의 계좌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특히 1년 이상 거주한 고용 외국인의 경우 신규 노동허가증 또는 갱신된 신분증을 제출해야 모바일 뱅킹 등을 연장할 수 있다.

외환 규제

해외 송금 및 해외 자금조달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어 자유로이 무제한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US\$1 = HRK 7.538(2022년 9월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4
비고	크로아티아는 초임 통계를 집계하지 않는다. 전체 평균임금은 약 1,500달러/월이다. 비공식적인 대졸-사무직 초임은 약 800달러/월(실수령) 내외이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2022년부터 월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0% 인상한 4,687.50 HRK(세금포함, 약 622 USD) 변경하였다. 참고로 2022년 상반기 미 달러대비 현지화가 큰 폭으로 평가 절하되었다. 2021년 환율이 1달러에 6.5 HRK 내외였으나 최근 인플레이션 및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7.54HRK 까지 평가 절하된 상황이다.				

〈자료원 : 크로아티아 통계청〉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1) 필수사항

고용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한다. 만약 서면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고용계약이 업무 시작일 이전에 합의되었다는 계약체결확인서를 서면으로 피고용인에게 제공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으며, 피고용인은 이를 통해 법적으로 고용계약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다. 만약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근무 시작 당일까지 서면으로 근무계약서나 계약체결 확인서를 발행하지 못할 경우 고용계약이 무기한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용계약 체결 시 고용주는 신규 피고용인을 크로아티아 연금보험(HZMO)과 크로아티아 건강보험(HZZO)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다. 고용 시작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크로아티아 연금보험(HZMO)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금보험에서 처리된 정보는 자동으로 크로아티아 건강보험에 등록된다.

고용계약서는 다음의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 단체명, 단체 소재지 및 본사
- 작업장, 고정 작업장이 없을 경우 업무가 다양한 장소에서 시행된다는 것을 명기
- 직무설명서에 직위, 직책 및 직장의 성격 명기
- 업무 시작일
- 계약직 고용일 경우 계약의 예상 지속 기간
- 계약 체결 시 혹은 계약확정서 발행 시 고용인의 유급휴가 존속기간 및 휴가 기간 결정 방법
- 계약체결 시 혹은 계약확정서 발행 시 고용주와 고용인의 고용계약 종료 통지기간 준수와 해고 통지 기간 결정 방법
- 피고용인의 기본 급여, 추가 수당 및 지급 규정
- 일일 혹은 주간 근무 기간 (상근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또한 계절성 직무 또는 개별 지정 작업장에서 일을 수행하는 경우 고용계약에 대한 법률적 추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습제도

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수습기간 동안 피고용인의 직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과의 고용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단, 이때 직무능력 부족에 대한 전후 사정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하며, 동 수습기간 내에는 최소 1주일 전의 통지로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

특수교육 및 특별훈련이 필요한 신규 피고용인에 대해 수습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수습직원의 고용 계약은 지정된 기간에 한해서 체결되어야 한다. 또한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수습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혹은 여타 규정에 따라 특정한 직업에 적능시험 혹은 근무 경력이 채용 기준의 선행조건일 경우, 고용주는 교육을 받았거나 시험을 통과한 자를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무급 인턴십”으로 채용할 수 있다. 무급인턴십의 지속 기간은 해당 직업의 최대 수습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고용계약 체결 및 해지,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고용법률에 관한 모든 사항이 인턴십에도 적용된다.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초과 근무시간은 1주일에 최대 8시간 및 1년에 10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상 별도로 명기된 사항이 없을 시에는 6시간 근무마다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속적인 근무일 사이에 노동자는 12시간의 휴식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크로아티아 노동법에 명시된 초과근무수당 지급률은 없으며 개별 고용 계약, 대기업의 경우, 노사단체 협상 등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명시된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현지관례로는 초과근무수당은 50%,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 시에는 30~40%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한다.

휴가

1) 연차

연속 6개월 이상 근무 시 연간 기본 휴가는 4주(20일)이며 기타 개인 중대사, 경조사(결혼, 자녀 출산, 가족 사망 등) 등의 이유로 최대 연간 7일간의 휴가를 추가로 가질 수 있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이 합의하지 않는 한, 1년에 최소 한 번은 2주 이상 연속해서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잔여휴가는 이월할 수 있으면 차년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2) 병가

유급 병가는 연 42일이며 병가 수당은 고용계약 및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한다. 최소 병가 수당은 직전 6개월 평균급여의 70%이다. 43일 이상의 병가급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기금(HZZO)을 기업에게 환급한다. 이때 최대수당은 4,257.28kn이며 비과세이다.(직전 6개월 평균급여의 70%가 4,257.28kn을 웃돌 시, 4,257.28kn만 지급)

장애인 직원의 유급 병가는 7일이며 8일 이상은 건강보험기금에서 환급한다.

해고

고용 계약의 종료는 아래 사유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 근로자의 사망
- 임시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
- 65세에 이르고 15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경우
- 불구로 인한 강제 퇴직
- 당사자 간의 합의
- 해고
- 법원의 판결

고용 계약의 취소는 아래 사유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 경제, 기술, 조직상의 이유로 해당 직무 수행이 불필요해진 경우(이 경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직무 수행을 위한 신규 채용 불가)
- 근로자가 자기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습기간이 지난 근로자와의 고용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 기간에 따른 최소 고용 계약 종료 통지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 최소 2주일 전에 통지: 근무 기간이 1년 미만
- 최소 1개월 전에 통지: 근무 기간이 1년부터 2년 미만 근무
- 최소 1개월 2주일 전에 통지: 근무 기간이 2년부터 5년 미만
- 최소 2개월 전에 통지: 근무 기간이 5년부터 10년 미만
- 최소 2개월 2주일 전에 통지: 근무 기간이 10년부터 20년 미만
- 최소 3개월 전에 통지: 근무 기간이 20년 이상 시

퇴직금

2년 이상 근속자는 고용계약 종료 시에 근무기간에 비례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자진사직 혹은 노동자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 시에는 지급의무가 없다.

퇴직금 최저 지급액은 고용계약 종료 시점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평균급여의 $1/3 \times$ 근무기간이며, 최대 지급액은 직전 3개월 평균급여의 6개월분이다.

다. 사회보장세

건강보험

기업은 노동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을 시켜야 하며, 노동자 급여의 16.5%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료를 고용주세로 매월 납부해야 한다(2019년 1월 개정).

고용보험

2019년 1월부로 사회보장제도가 개편되어, 의무고용보험이 폐지되었다. 이전에는 노동자 급여의 1.7%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고용주세로 매월 납부해야 했다.

산재보험

2019년 1월부로 사회보장제도가 개편되어, 의무산재보험은 폐지되었다. 이전에는 노동자 급여의 0.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고용주세로 매월 납부해야 했다.

국민연금

노동자는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고용주가 노동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한다. 연금납부액은 세대 간 연대 연금(15%)과 개인 저축자본 의무연금(5%)을 더해서 총 급여의 20%이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 크로아티아의 법인세는 기본 법인세는 18%이며, 연수익 750만 쿠나(약 16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는 10%로 감면된다.
 - 크로아티아 정부는 2020년부터 법인세 감면대상 중소기업 범위를 연수익 300만 쿠나에서 750만 쿠나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크로아티아 기업의 약 93%가 혜택을 보게 되었다.
 -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1년부터 영세 법인에 해당하는 연수익 750만 쿠나 이하의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기존 12%에서 10%로 인하하였다.
- 원천징수 법인세는 15%이나, 배당금 및 이윤배분금은 10%가 적용된다.
- 조세피난처 또는 금융 센터로 간주되는 지역에 본사나 기업운영권을 가진 모기업을 가진 개인이나 회사에게 지불하는 모든 유형의 서비스에는 20%의 법인세를 부과한다. 단, EU 회원국과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한 국가는 예외이다.
- 접대비의 50%는 법인세 대상에서 공제된다.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20%와 30% 두 구간으로 차등부과한다.
 - 20% : 연 360,000쿠나 혹은 월 30,000쿠나 이하
 - 30% : 연 360,000쿠나 혹은 월 30,000쿠나 이상
- 기본적으로 연 48,000쿠나 혹은 월 4,000쿠나가 소득공제되며,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올라간다.
- 개인소득세와는 별도로 총 납부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가 산정된다.
 - 자그레브시는 18%의 지방세가 적용된다.
- 크로아티아 정부는 청년층의 해외 이탈 방지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25세 이하 청년에 대한 소득세 전면 철폐, 26~30세 청년은 소득세의 절반을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2022년에는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취업할 경우 소득세 면제 최대 금액을 15,000 쿠나에서 24,000 쿠나로 상향 조정하였다.

부가가치세

- 기본 부가가치세는 25%이다..
- 2022년 크로아티아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특별 대책을 내놓았으며 품목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조정되었다.
 - 4월1일부터 1년간 에너지 가스의 부가가치세가 25%에서 5%로 조정되었으며 이후에는 13%로 조정되었다.
 - 딸감용 나무, 펠렛, 브리켓 등의 부가가치세를 25%에서 5%로 하향 조정되었다.
 - 육류, 생선, 계란, 과일, 식용오일, 유아음식 등의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3%에서 5%로 조정되었다.
 - 농업용 제품으로 씨, 비료, 살충제 등의 부가가치세는 25%에서 5%로 조정되었다.

- 위생용품은 13%, 스포치 및 문화 공연 티켓의 부가가치세는 13%, 5%로 각각 삭감되었다.

○ 2020년 1월부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숙박 및 요식업에 대해 13% 부가가치세 시행하고 있다.

특별소비세

○ 에너지 제품, 전기, 담배·굴련, 주류 등의 품목에 대해 소비세가 부과된다.

○ 커피, 음료수, 자동차, 자동차 보험 등에 대해서 특별세가 부과된다.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크로아티아 공화국(이하 '크로아티아')은 19세기 후반부터 지식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입법 및 규제 활동을 시작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오랜 역사가 있는 나라이다. 또한 크로아티아는 국제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의 회원으로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준수하는 국제표준에 따라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도 높은 수준의 관련법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크로아티아는 자국의 지식재산권 법률체계에 EU의 공동체(acquis communautaire) 적용을 단기간에 완료했으며, EU 규범의 도입과 시행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크로아티아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새로운 규정과 법률 연구에 대한 모든 권한은 크로아티아 지식재산청에 있다.

크로아티아의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은 특허법(Patent Act)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 인정되고,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권은 형식적인 요건만을 검토한 후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된다.

디자인권은 산업디자인법(Industrial Design Act)에 의해 규정되고 있고, 보호기간은 5년이나 최대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크로아티아는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상표권은 상표법(Trademark Act)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식별력이 인정되고 기타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년간 보호되고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저작권은 저작권 및 관련법 (Copyrights And Related Rights Act)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다른 지적재산권과는 달리 행정적 절차 또는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2020년 특허법이 개정되며 실용신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각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보호 요건, 등록 절차 등은 국제적인 기준과 유사하다. 크로아티아 지식재산청(특허청)이 1차적으로 지식재산권 권리를 허여하는 심사 기관이며,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상업법원 등에 항소할 수 있다.

한편, 크로아티아는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 (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 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9. 청산 및 철수

청산 및 철수

1) 개요

청산 혹은 철수는 기업의 존재를 끝내는 법률적 절차로, 한 회사 생명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다.

○ 법적 근거

- 크로아티아 회사법은 존속하는 회사를 끝내는 근거 및 회사 청산 절차를 규정하며, 회사 청산 절차는 회사의 유형별로 다르다.
- 회사 유형에 따라서 회사의 도산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회사가 설정한 기간의 만료, 법원 명령, 회사 주주들의 특별 결의, 채권자들의 특정 행동 등이 있다.

○ 청산의 목적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즈니스 업무를 종결
- 이익관계자들의 요청을 수집
- 회사 자산의 재배치
- 파악된 자산에서 빚을 청산하고 여분의 자산을 회사 구성원에 배분
- 여분의 자산을 배분할 때는 각각의 보유 지분을 기준으로 배분하거나, 구성원 간의 합의에 혹은 회사의 법인서류에 근거

- 최종적으로 상업 법정 등기소에서 회사 등록이 말소되면 회사의 존속이 중단된다.

- 청산방법

- 기업의 청산은 회사의 주주가 지정하거나 법원에 의해 지정된 대표청산인 혹은 여러 명의 청산인을 통해서 수행된다.

- 위와 같이 청산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즈니스 업무를 종결시키며 회사의 자산을 파악해서 남은 자금을 주주들에게 배분한다.

- 만약 기업의 임원들이 청산인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권한은 청산인이 지정되는 순간 종료된다.

2)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의 청산

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사의 등록 말소 결정이 법원 등기소에서 나고 나면, 회사가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제3자가 알 수 있게 하려고 회사 명칭에 “청산 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도록 변경된다. 또한, 청산인은 청산재무제표 및 기업 현황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조세 당국에 회사의 청산절차를 보고해야 한다.

청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 법적 근거 제출

- 법원 등기소에 회사존속 중지 서류 제출해야 하며, 청산이 결정되면 크로아티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Narodne Novine”).

-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요 임원(내부구성원)들이 회사 청산을 실행하는데, 회사의 주주가 임원(내부구성원) 대신 별도의 청산인을 지정하게 되면, 청산인이 법원과 크로아티아 통계청에 청산을 위한 책임자로 등록된다.

- 관보 게재

- 채권자들이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회사는 크로아티아 관보에 회사 청산 결정 공표를 15~30일 간격으로 세 번 해야 한다.

- 가까운 채권자(가족, 친구, 동료, 지인 등)에게는 청산 과정에 대해서 별도의 고지를 해야 하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또한 채권자들은 관보에 마지막으로 공표가 실린지 6개월 이내에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 청산과정 보고 및 빚 배분방법 결정

- 회사의 빚을 청산하고 나면, 청산인은 청산 과정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하고, 회사 구성원들에게 남은 자금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해야 한다.

- 또한, 부채가 정리된 후에는 이사회가 청산 과정의 보고를 받고, 제안된 여유 자금 배분 방법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 자금 배분

- 빚 청산 이후에 남은 자금은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배분되며, 기한은 관보에 3번째 청산고지를 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이다.

-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면, 채권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담보물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만 남은 기금을 주주들에게 배분할 수 있다.

- 이사회가 회사 청산에 대한 청산인의 보고 및 남은 자금의 배분에 대한 승낙을 한 후 30일 이내에 청산인은 회사 정관의 조항에 따라서 남은 자금을 회사 구성원에게 배분한다.

- 모든 주식이 동일한 권한을 가질 경우에는 남은 자금은 구성원 각자의 회사 지분에 근거해 배분된다.

- 이사회 청산 보고

- 남은 자금을 회사 구성원에게 분배한 후, 청산인은 회사 이사회에 최종 청산 재무제표 및 청산 보고서를 제출한다.

- 법원등록 삭제 요청

- 이사회가 청산보고 서류를 승인하게 되면 청산인은 법원 등록소에 회사의 등록기록 삭제 요청을 한다.

- 이때 회사의 이사회가 청산 재무제표를 승인했다는 결정사항을 동봉

- 회사는 조세 당국으로부터 부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납세필증을 받아야 하며 법원 등록소에 회사등록 삭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 청산 후 손해배상 요구

- 법원 등록소에서 회사가 삭제 완료되면 채권자는 청산인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나, 채권자는 청산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유한책임회사 청산

- 법적 근거 제출

- 법원 등기소에 회사존속 중지 서류 제출해야 하며, 청산이 결정되면 크로아티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Narodne Novine”).

- 회사의 소유자가 청산인을 지정하게 되면, 청산인이 법원과 크로아티아 통계청에 청산을 위한 책임자로 등록된다. 통상 등기에 명시된 CEO(Managing Director)가 청산 책임자가 된다.

○ 관보 게재

- 채권자들이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회사는 크로아티아 관보에 회사 청산 결정 공표를 15~30일 간격으로 세 번 해야 한다.

- 가까운 채권자(가족, 친구, 동료, 지인 등)에게는 청산 과정에 대해서 별도의 고지를 해야 하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또한 채권자들은 관보에 마지막으로 공표가 실린지 6개월 이내에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 청산과정 보고 및 빚 배분방법 결정

- 회사의 빚을 청산하고 나면, 청산인은 청산 과정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하고, 지분별로 남은 자금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해야 한다.

○ 자금 배분

- 빚 청산 이후에 남은 자금은 지분 보유자에게 배분되며, 기한은 관보에 3번째 청산고지를 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이다.

-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면, 채권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담보물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만 남은 기금을 지분 보유자들에게 배분할 수 있다.

○ 법원등록 삭제 요청

- 회사 소유자가 청산보고 서류를 승인하게 되면 청산인은 법원 등록소에 회사의 등록기록 삭제 요청을 한다.

- 회사는 조세 당국으로부터 부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납세필증을 받아야 하며 법원 등록소에 회사등록 삭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 청산 후 손해배상 요구

- 법원 등록소에서 회사가 삭제 완료되면 채권자는 청산인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나, 채권자는 청산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4) 합자회사 청산

합자회사를 청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발생하면, 일반 합자 회사가 파산 소송 절차를 밟지 않는 한, 합자회사를 청산할 수 있다. 일반 합자회사의 구성원에 의해 달리 결정된 사항이 없거나, 회사 정관에 따로 규정되지 않으면 합자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청산을 수행한다. 청산인의 업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 업무를 종결시키며, 합자회사의 자산을 파악 및 수집하여 채무를 이행하고, 남은 자금을 일반합자회사의 구성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또한, 청산인은 청산절차의 처음과 마지막에 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한다.

청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 법적 근거 제출

- 일반 합자회사의 청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원 등기소에 등록되면, 제3자가 회사가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합자회사의 이름은 "청산 중" 단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 자금 배분

- 빚이 청산되고 나면 청산인은 남은 자금을 각각의 보유 주식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분한다.

- 남은 자금을 분배할 때 회사 구성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청산인은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분배를 연기해야 한다.

○ 법원등록 삭제 신청

- 청산 절차가 종료되고 나면 청산인은 법원에 합자회사의 법원등록을 삭제시키는 신청서를 제출한다.

- 법원 결의안 발의

- 법원 등기소에서 합자 회사 등록 말소 결의가 발의되고 나면 회사의 존속이 중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 합자 회사의 모든 기록 및 장부는 법원 등기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5) 지사 청산

회사법상 지사는 법인이 아니며, 지사의 권리와 채무는 모회사에 귀속된다. 청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 청산근거

- 회사의 설립자가 지사 종결에 관한 결정을 내릴 시

- 모회사가 등록 소재지인 국가에서 더는 존재하지 않을 시

- 지사 종결 결정: 지사의 설립자가 지사의 종결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 지사 청산 신청: 지사 등록 말소에 대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 결의안 발의: 그 후 법원은 지사 등록 말소에 대한 결의안을 발의한다.

- 회사법에는 지사 청산 이전에 법원 등기소에서 지사의 회사 등록 말소를 선행해야 한다는 법적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6) 대표사무소 청산

대표사무소는 경제부의 결의를 근거로 등록소에서 말소되며 경제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표사무소의 등록 말소 결의안을 발표할 수 있다. 등기소에서 등록말소를 하는 것에 선행하는 공식적인 청산 절차는 없다.

- 설립자가 대표사무소의 종결에 관해 결정을 내렸을 때

- 모회사가 본국에서 존속을 중단할 경우

- 대표사무소가 크로아티아 법에 어긋나는 사업을 행하였을 경우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특성

소비인구

크로아티아 인구는 2022년 9월 기준 약 387만 명이며 14세 이하 인구는 14.27% 14세에서 65세까지 인구는 63.28% 65세 인구는 22.45%로 노령화 비율이 매우 높다. 중위연령 역시 EU 평균보다 높은 45.3세이며 기대 수명은 81.6세이다. 출산율 저하와 더불어 청년층의 EU 내 타 국가로의 이주 수요가 노령화를 가속하는 주요 요인이다.

〈자료원 : 크로아티아 통계청〉

소비 성향

크로아티아의 경우 EU 평균대비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소비가 많다. 2021년 12월 EU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인들의 실질소득소비(AIC : Actual Income Consumption) 수준에서 EU 평균보다 높은 32% 를 기록하여 불가리아(39%), 헝가리(30%) 등과 같이 소득대비 소비가 많은 국가로 집계되었다. 다만 최근 EU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특히 Housing 비용 중 가스, 전기 등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EU 국가들의 소득 대비 식품과 집(Food and Housing)에 대한 소비 비중이 40% 이상 높게 집계되면서 평균화 된면이 있다. 2022년 2월 EU 통계청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인들은 소득의 40%를 식품과 집(Food and Housing)에 소비하는데, 직전 34% 대비 6% 정도 증가하였지만 타 EU 국가들이 더 높게 증가하면서 통계적으로는 EU 평균에 가깝게 되었지만 전통적으로는 소득대비 필수재, 기본재에 대한 소비 수준이 높은 상황이다.

기본적 부분에 대한 고정 소비율이 높다 보니 합리적 소비성향이 높아 대량 판매를 통해 가격 절감이 가능한 대형 유통 체인점으로 소비자들 많이 몰리고 있다. 소비자들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대형 유통체인들(KONZUM, Metro, Lidl, Mercator 등)의 매출액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코로나 초기 다소 타격을 입었던 고급 쇼핑몰인 City Center 1, King Cross, West Gate 등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다. 2021년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11.8%가 증가하였으며 상위 10대 유통체인들의 매출액은 55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판매 증가로 인해 최근에는 대형 유통체인들이 가성비 좋은 PL(Private Label) 제품을 계속 선보이고 있기도 하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여전히 현금이 주요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신용카드 등 현금 없는 결제가 확대되고 있다. 크로아티아 중앙은행(2021년 7월)에 의하면 현금 결제는 78%, 카드 결제는 21%로 조사되었으며 1인당 평균 2.55개의 지불용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 카드 등 신용거래는 지난 5년간 거래량은 47%, 거래 건수는 58%씩 각각 증가하였다.

크로아티아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국내산 제품을 선호(특히 국내산 식품에 대한 자부심이 강함)한다. 수입품의 경우 섬유 패션 및 신발류의 경우 이탈리아산, 내구 소비재는 독일산, 일부 생필품은 오스트리아산, 식품의 경우 헝가리산을 선호한다. 높은 부가세(25%)로 인해 인근국을 직접 방문해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국외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식품 등 외국 구매품에 대해 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1인당 구매 한도를 100달러에서 50달러로 삭감). 또한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EU 규정에 따라 소매의 온라인 쇼핑도 EU 외국가에서 들어올 경우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중국 등으로부터의 온라인 소매 구매 장점이 사라졌다. 2022년에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 상품별로 부가가치세를 낮추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팜플릿 등을 통해 가격을 비교한 뒤 저렴한 유통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도 한데 국민의 90% 이상이 할인의 폭이 크고 선택의 폭이 넓은 KONZUM, Billa, Interspar, Plodine 등 대형마트 또는 전문 소비재 매장을 이용하고 있다. 2022년 7월 소매업의 명목 성장률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27.5%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유통업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시장은 오프라인 매장의 보조수단으로 주로 이용됐지만 코로나와 인터넷

넷 기술발전과 소비자인식 변화에 따라 온라인 쇼핑의 이용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비교가 쉽고 기존 오프라인 매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온라인 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32% 가까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알리 익스프레스, 아마존, 이베이 등의 해외 기반의 온라인쇼핑몰과 크로아티아 온라인몰 모두 성장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온라인몰은 품목에 따라 전문화 되어 있는데 식자재 및 소비재 일반은 KONZUM Kilk, 의류 및 화장품은 Zara, 기계 장비 장치 등은 Bauhaus, Pevex, 전자제품은 ekupi, mall,hr 등이 유명하다. 전체 온라인 시장 규모는 해외 구입이 57%를 자국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43% 비율로 해외가 다소 높지만 크로아티아 온라인 쇼핑몰의 점유율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전자상거래 규모는 1억 달러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크로아티아 국민에게 한국에 대한 인지도는 생각보다 높은 편으로(대다수 국민이 한국을 알고 있음) 주로 스포츠(월드컵 개최, 축구, 태권도 등), 한국산 자동차 및 전자 제품 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 및 가전제품, 통신기기 등은 경쟁력 있는 가격에 높은 품질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삼성, LG 현대기아자동차가 길거리 광고, TV 상업 광고를 하고 있으며 K-Pop의 인기로 인해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 관광객 증가로 현지 언론들도 한국에 대한 기사를 꾸준히 게재하면서 인지도 상승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최고경영자가 거래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수입을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의사결정이 지연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재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크로아티아 기업은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 오랫동안 거래 관계를 유지한 공급업체가 있으면 쉽사리 거래선을 전환하지 않는다. 가격 및 품질보다도 이러한 전통적인 거래 관계가 우선시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므로 거래 초기에는 이메일이나 전화 통화보다 직접 크로아티아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상호 방문을 통해 인간적인 신뢰 관계가 구축되면 이후 거래 진행이 훨씬 수월하다.

크로아티아에서 L/C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외환 계좌와 국내 계좌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크로아티아에 기업이 등록돼 있어야 한다. L/C개설을 위해서는 전체 L/C 금액 이상이 계좌에 잔고로 있어야 하며, 잔고가 있을 경우 L/C 개설에 3~5일이 소요된다. 반면, 은행 계좌에 잔고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L/C 개설을 할 경우에는 개설 은행이 L/C 개설 의뢰인의 신용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3~6개월 정도의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0.9%의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계약 기간 관련, 연중 최대 대목은 크리스마스 이전 11월 15일~12월 25일 기간이며 이 기간 중의 판매를 위해 11월 초순에는 물품이 현지에 공급돼야 한다. 우리나라와의 거래 시에는 운송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9월 말이나 10월 초 선적이 이뤄져야 하나, 8월 말까지 대부분의 업체가 휴가를 가는 관계로 하반기 물품 구매는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 최근에는 블랙프라이데이에도 많은 세일즈 프로모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12월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 외 신학기 시작 전인 2월 중순, 하계휴가 시작 전인 6월, 부활절 전인 4월 초 등이 주요 구매 시즌으로 우리나라와의 거래는 이보다 2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적기가 된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시즌엔 선물용품, 하계휴가 전엔 레저/오락 용품, 신학기 시작 전엔 학용품 등이 주요 구매 품목이다.

크로아티아 수입상들은 일반적으로 인근 유럽 국가인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공급업체들과 오랫동안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시장은 대부분 이들 4개 국가 제품이 평균 50%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데, 이는 빠른 운송과 신속한 A/S 지원, 소량 다품종 수시 주문 가능, 별도의 대형 물류 창고 설치 불필요, 외상 거래 가능(30~60일) 등 협소한 크로아티아 시장에 잘 맞기 때문이다.

현재 이러한 기존 유럽 공급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가격과 품질 모두 중요하지만, 유럽 공급업체가 수용하는 다품종 소량 주문, 운송 기간과 A/S 지원 문제, 대금 결제방법 등이 선결돼야 한다. 크로아티아의 경우 시장 규모가 작아 소량 주문하는 특성을 보이며, 이러한 구매 습관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최소 주문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문이 많다.

현지 에이전트는 가능한 1개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복수 에이전트를 선정할 경우, 마케팅 활동 효과가 분산된다고 생각해 적극적인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협소한 현지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단일 품목보다는 여러 품목을 종합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복장

첫 번째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경장 또는 넥타이가 없는 경장 등이 무난하다. 여성은 비교적 선택권이 자유로우나 지나친 노출은 삼가는 것이 좋고, 역시 경장 차림이 무난하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사무 관리직이나 세일즈 직원은 양복 차림이 일반적이나 기술직이나 공장 근로자는 캐주얼 차림이 많다.

2) 인사

비즈니스 상담을 위해 만나거나 헤어질 때 남성과 여성 모두 악수하는 것이 관례이다. 특히 여성이 있을 경우 남성보다 여성과의 악수를 먼저 하는 것이 예의이며, 이 경우 여성이 손을 내밀 경우에 한한다. 특히 악수할 때 장갑을 끼고 해서는 안 되며 간단한 악수와 인사 후 명함을 교환하는 것이 좋다.

친한 사이가 아니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며 Mr. Mrs. 다음에 성을 붙여 부르는 관습이 있다. 여성이라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Ms.로 칭하는 것이 좋다. 크로아티아에서는 Miss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비교적 어린 여성을 지칭하는 말로 인식해 잘 사용하지 않으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비즈니스 상담 시에는 Ms.로 호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크로아티아 바이어와 첫 상담 시 자연스러운 이야기 주제로는 스포츠가 가장 무난하다. 크로아티아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2위를 차지했고 루카 모드리치가 골든볼을 수상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3위 이후 20년 만의 쾌거로 크로아티아 모든 국민이 규합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축구 이야기로 화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이 외로는 핸드볼(2004년 올림픽 금메달, 2018년 유럽핸드볼선수권 대회 개최), 테니스(2018년 7월 ATP기준 Marin Cilic-세계 7위, Borna Coric-세계 21위), 격투기(Mr. Mirko Filipovic, 일명 CroCop) 등에 관한 이야기도 좋다.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K-Pop의 저변이 넓으므로 청소년 자녀를 둔 바이어를 대상으로 K-Pop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도 좋다. BTS가 현지에서 맥도날드와 협업을 통해 버거 제품을 선보이기도 하였으며, 영화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도 크로아티아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 문화 관련 얘기를 꺼내는 것도 자연스러운 면담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선물

크로아티아에서 비즈니스 상담을 할 때 첫 상담부터 선물을 제공한다면 다소 의외로 생각할 수 있다. 현지 문화에 비추어 볼 때, 선물 제공을 비즈니스의 한 요소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 USB 메모리 스틱 등 비즈니스 관련 저가의 물품은 크로아티아 바이어들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는 바 선물로 활용할 만하다. 또 한국을 상징하는 기념품이나 책 한 권 등 작은 선물은 불편함 없이 받아들이는 편이다.

크로아티아 비즈니스 파트너의 가정에 초청받았다면 와인, 디저트(초콜릿 등), 꽃다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의 주류나 공예품 등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단, 꽃 중에서 장례식 때 쓰이는 국화나 연인들을 위한 빨간 장미는 가정 방문용 선물로는 삼가야 한다. 또한, 꽃송이 수는 유럽 전통에 따라 홀수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와인 선물은 한두 병이 적당하다. 크로아티아에는 와인에 대해 전문가 수준의 식견을 갖춘 사람이 많으므로 고가의 와인도 좋겠지만 와인에 대한 내용이나 스토리를 알고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업무상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고자 할 경우에는 만년필, 액자, 고급 열쇠고리, 명함 지갑, 가죽 서류 가방 등이 무난하다. 반드시 유명 고급 브랜드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연말에는 크리스마스카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카드는 크리스마스 1주일 전쯤 도착하도록 한다. 크로아티아인에게 줄 선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는 회사 로고가 새겨진 각종 선물, 장례식을 연상하는 브로치나 손수건, 애도의 표시인 검정색과 금색으로 포장된 선물, 불운을 상징하는 자숫빛 포장, 친구, 연인, 가족 간의 이별을 연상시키는 칼이나 기타 날카롭고 뾰족한 형태의 선물 등이다. 또한, 넥타이는 크로아티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크로아티아인들의 자부심과 품질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선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4) 약속

크로아티아 정부 관계자와 약속하기 위해서는 2~3주 전에 레터나 e-메일로 방문 약속을 잡아야 한다. 크로아티아 기업(바이어) 방문 시에는 1~2주 전에 e-메일, 팩스나 전화 등으로 희망 방문일시를 제시하고 확약받으면 된다. 금요일 오후에는 가급적 비즈니스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10시나 11시, 14~15시에 약속 시각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속 시각에 대한 관념은 개인마다 다르나 다소 늦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이나 정부 기관을 방문 시에도 약속 시각보다 15~30분 정도 기다리다가 만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외국 방문자는 도착 후 다소 기다리더라도 약속 시각에 맞추어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호텔이나 외부에서의 약속 시에는 교통 체증과 주차난으로 약속 시각에 늦는 경우가 꽤 있으므로 약속 시각을 어겼다고 불만을 제기하거나 기분이 상할 필요 없이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상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크로아티아 바이어를 직접 방문할 경우 7월~8월, 그리고 12월부터 1월 초 기간은 크로아티아인들 대부분이 휴가를 즐기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는 약속을 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대화 요령

크로아티아인들은 서면보다는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는 것을 선호한다. 또 보통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는 크로아티아인들이 너무 부드럽게 돌려서 말을 하거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을 약하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기 때문이다. 눈을 마주치며 말하는 것은 존중심의 표현이므로 반드시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도록 해야 한다.

크로아티아 바이어가 현재 거래 중인 경쟁사 품목에 대해 품질과 가격을 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경쟁사 제품이 저가의 중국산이라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 크로아티아인들은 자신들이 취급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소규모 시장에서 그 제품을 팔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취급하고 있는 제품의 장점은 무엇인지, 어떤 경유를 통해 취급하게 되었는지 등 바이어에게 경청하는 자세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좋다. 이후 우리 제품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바이어의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산 제품을 깎아내리고 우리 제품의 장점만을 설명하여 바이어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특히 조심해야 한다.

크로아티아 사회는 매우 정형화돼 있지만, 기업 문화는 개인적 접촉을 선호하는 편이다. 대부분의 크로아티아 사업가들은 외국어를 영어, 이탈리아어, 독일어를 구사할 줄 알며, 최근 젊은 경영인들은 통역이 전혀 필요 없이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사업 파트너를 대할 때는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말하기 전에 통역사에게 미리 묻는 것이 관례적이다. 또, 첫 상담 시에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몇 가지 크로아티아 인사말 정도는 알아가는 것이 좋다.

6) 식사

특별히 금기시하는 음식은 없다. 대체로 독일, 이탈리아 및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음식과 비슷하지만, 아드리아 해안을 끼고 있는 크로아티아는 해산물 요리가 다른 인근 유럽 국가에 비해 다양하며, 음식은 대체로 짜게 요리하는 특성이 있다. 크로아티아 비즈니스 파트너의 초청으로 가정에서 식사하게 될 경우 가급적 차린 음식은 깨끗이 비우는 것이 예의이다. 식사 중 트림은 무례한 것으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한다. 크로아티아 전통 음식점이나 가정에서는 식사 주문 전이나 식사 전 독한 브랜디를 한 잔씩을 제공하는 것이 관례이며, 식사 중에는 와인이나 맥주를 즐기는 편이다. 또한, 크로아티아인은 자국산 와인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은바, 접대하기 전 와인에 대한 소개나 설명이 있을 경우 손님에 좋은 시음 결과를 기대하기도 한다.

7) 문화적 금기사항

- 크로아티아에서는 비즈니스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면 다음과 같은 화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 정치 관련 및 제2차 세계대전 관련 질문: 크로아티아는 1991~1995년까지 당시 유고연방으로부터 독립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아픈 기억이 있으나, 현지 사정을 잘 알지 못해 내란이라고 언급하거나 자꾸 전쟁 관련 질문을 하는 것은 무례한 언행으로 생

각될 수 있다.

-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 크로아티아를 발칸 국가 또는 동유럽으로 분류하지 말아야 한다. 크로아티아는 중남부 유럽에 속하며 발칸 반도 상의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므로 함부로 발칸 국가로 분류하면 불쾌하게 생각한다.

- 종교 관련 화제 언급: 옛 유고연방은 종교적 분쟁(무슬림, 그리스 정교, 가톨릭)으로 인해 분할됐다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가급적 종교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편이 좋다. 구 유고연방 및 발칸 반도는 서로 종교가 다르고 종교 분쟁이 많았던바, 종교 관련 화제는 민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3. 주요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1) ekupi(www.ekupi.hr)

- 개요: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으로 온라인 판매만으로는 가장 큰 기업이기도 하다. 2010년 설립되어 인근국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에도 진출해 있으며 2020년 기준 매출액은 4,900만 유로이며 직원은 70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전자 제품이 주력 판매물품이나 이 외에도 가정 주방용품, 스포츠용품, 문구류, 자동차 액세서리, 향수, 장난감 등 다양한 제품으로 판매 영역을 넓히고 있다.
- 특징: 가장 대중적이며 많이 알려진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규모가 크다 보니 여타 온라인 플랫폼 대비 가격대가 저렴한 편이며, 배송 및 환불 등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가장 큰 할인 행사는 블랙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2) konzum klik(www.konzum.hr/kreni-u-kupnju)

- 개요: 크로아티아 전역에 7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현지에서 가장 큰 오프라인 소매체인 Konzum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식품을 포함 일반적인 잡화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 기존 식품 대기업인 Argokor 그룹이 2018년 파산할 때 Konzum 만을 살려 운영을 시작하였고 코로나 시기 온라인 플랫폼을 런칭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Konzum의 전체 직원수는 10,161명이며 2020년 매출액은 13억 유로다. 온라인 플랫폼만의 직원 및 매출액은 공개되고 있지 않다.
- 주요 판매 품목: 일반 슈퍼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이 구매 가능하다. 채소, 과일, 빵, 가공식품, 음료수, 부엌용품, 세정 용품, 문구류, 의류 등 매우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 특징: 식품 중심의 가장 큰 현지 소매체인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가격 및 배달 비용이 매우 저렴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락다운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집에 따라 매출이 크게 성장하였다.

3) bazaar(bazaar.hr)

- 개요: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ekupi와 같이 현지에서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다. Ekupi 보다 3년 늦은 2013년 설립이 되었으며 초기에는 옷이나 액세서리를 중심으로 소규모에서 시작하였으며 2020년 매출액 7백만 유로로 성장하였다. 전체 종업원 수는 17명이다. Bazaar는 사업을 세르비아까지 진출시켰다.
- 주요 판매 품목: 초기 옷이나 액세서리로 시작하여 코로나 시기에 음식 판매가 늘면서 주 판매 품목이 음식으로 바뀌었다.
- 특징: 초기에 의류 및 패션 액세서리로 시작하여 아직까지 관련 품목 인터넷 플랫폼으로 인지도가 높다.

4) DM online(www.dm.hr/services/online-shop)

- 개요: 독일계 소비재 오프라인 체인인 DM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크로아티아에서는 1994년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런칭하여 오프라인에서 팔고 있는 제품들을 온라인에서도 판매하기 시작했다. DM 은 크로아티아에 전국적으로 16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올리브영”과 비슷한 판매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 DM 온라인만의 매출액과 직원수는 확인되고 있지 않으나 전체 매출액은 2020년 기준 2억5천만 유로이며 직원수는 1,400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화장품을 중심으로 위생용품, 화장 관련 기기, 영양제 등을 판매하고 있다.
- 특징: 크로아티아에서 온라인을 통해 화장품과 위생용품을 가장 많이 팔고 있으며 가격 또한 타 온라인 플랫폼 대비 저렴한 편이다.

5) Ponudadana.hr(www.ponudadana.hr)

- 개요: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Groupon” 가 유사한 컨셉으로 운영되고 있는 크로아티아 기업이다. 할인된 쿠폰 및 가격을 제시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 분야에서는 크로아티아에서 독보적인 기업이다. 2010년 설립되었으며 직원은 12명이다. 2020년 기준 66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 주요 판매 품목: 각종 공산품뿐 아니라 호텔 및 여행 패키지 등과 같은 서비스제품, 의료비용 등 매우 다양하다.
- 특징: 할인 제품 및 할인된 가격의 서비스 상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기업이다.

	6) njuskalo(www.njuskalo.hr) ○ 개요: 크로아티아의 대표적인 중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우리나라의 당근과 비슷한 회사로 2007년 설립되었으며 중고거래로 가장 큰 플랫폼이며 유일하기도 하다. ○ 주요 판매 품목 : 개인이 팔수 있는 모든 제품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일반적 소비재뿐 아니라 자동차 등의 고가 제품도 해당된다. 최근에는 플랫폼의 인기로 인해 신제품을 포스팅해서 판매를 하기도 한다 ○ 특징: 영어는 사용할 수 없다. 포스팅은 무료이나 별도 광고는 유료이다. 개인과 개인간 거래이다.
--	--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KOTRA 조사 대행 및 시장개척단 참가 성공사례

국내 C사는 시장개척단 참가 이전에 시장성 및 바이어 조사를 위해 조사 대행 보고서를 의뢰해 KOTRA 자그레브 무역관이 이 회사 품목에 관한 조사 대행을 수행했다. 이로써 크로아티아 지반 구조가 암반 위주이고 터널 공사와 지하수 개발에 대한 수요가 많음을 알았고, 이를 통해 많은 유력 바이어를 발굴, 조사한 바 있다. 조사된 바이어에게 시장 개척단 상담을 자연스럽게 연계해 10개 사와의 상담 주선에 성공했으며, 그 중 1개 바이어로부터 2건의 오더를 받아 거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성공 요인으로는 정확한 시장성 파악과 현재 수요를 가지고 있는 바이어 발굴, 상담 후 계속된 무역관의 바이어 접촉을 통한 구매 일정과 구매 계획을 파악하고, 중간에서 지속적인 교신 지원과 협상 지원을 통해 상호 신뢰를 하고 거래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선적한 제품이 원래 기계에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무역관이 중간에서 반송 및 경비 처리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며, C사도 이에 적극 대처해주는 등 바이어에게 신뢰를 준 것이 성공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 KOTRA 지사화 사업 성공사례

○ 성공사례

2014년 문을 연 H사는 방부제와 인공염료 같은 화학물질 없이 자연에서 얻은 원료를 사용해 정직한 화장품을 만들고 있다. 설립한 첫해에 수출을 성사시키는 등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에 공을 들여온 이 기업은 현재 전 세계 20여 개 나라에 제품을 판매하는 수출기업으로 성장했다.

2017년 유럽 시장에 첫발을 내딛고 유럽 내 인지도를 쌓아가던 이 기업에 2019년 4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KOTRA 자그레브무역관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온 것이다. H사에게 있어 지사화 사업은 처음이 아니었다. 중국, 동남아 소재 무역관의 지사화 사업에 참가해 해외 시장 규모와 트렌드를 파악하고 잠재 바이어를 발굴하는 등 해외 사업을 확장해왔다. 하지만 동유럽인 크로아티아는 아직 미지의 시장이었다.

K-뷰티 열풍이 서유럽을 넘어 동유럽으로 서서히 번지고 있는 상황. 크로아티아 역시 많은 바이어들이 한국 제품 수입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적당한 한국기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병행수입으로 인근 유럽국가를 통해 한국산 제품을 들여오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던 자그레브무역관은 크로아티아 최대 위생용품 생산기업인 A사가 요청을 해오자 적당한 한국기업 찾기에 나섰다. 자그레브무역관의 오랜 고객사인 A사는 미용분야로 사업영역을 넓힐 계획으로 K-뷰티 제품을 취급하고 싶어했다.

몇 차례 상담으로 A사의 요구사항을 파악한 자그레브무역관은 2019년 3월 보톡스, 필러, 마스크팩 제품에 대한 바잉오퍼를 발굴해 KOTRA 바이코리아 플랫폼에 등록하는 한편, 미용제품의 유럽 필수 인증(CPNP)을 취득한 우리 기업 발굴에 착수해 10개 중소기업에 A사에 소개했다. A사는 이들 중 H사를 포함한 4개 회사 제품에 대한 샘플 테스트를 진행했다.

크로아티아 소비자가 유기농 제품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천연원료로 만든 휴웨이 제품의 경쟁력과 시장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한 자그레브무역관은 A사의 바잉오퍼를 심층 지원하는 것은 물론 여러 방면에서 H사의 크로아티아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H사에 지사화사업 가입을 제안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자그레브무역관 지사화 사업을 시작한 H사는 이메일은 물론 WhatsApp을 통해 실시간 소통하는 지사화 담당직원의 열정에 매우 놀랐다고 한다.

샘플 테스트를 마친 A사는 H사 마스크팩에 크게 만족해 곧바로 H사와 마스크팩 공급 독점계약을 체결하길 원했다. 자그레브무역관은 H사를 대리해 A사와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면서 양사의 요구사항을 열심히 조율해 나갔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 H사가 가진 다양한 제품라인을 고려할 때 마스크팩 한 제품으로 독점공급 계약을 맺는 것이 향후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A사에 다른 제품을 포괄하는 계약을 맺도록 계속 제안했지만, A사는 7,500달러 규모로 마스크팩 독점계약을 맺겠다는 주장을 꺾지 않았다.

자그레브무역관은 A사의 오퍼를 거절하고 구매력이 있는 다른 바이어를 발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 당장 계약을 맺는 것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장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었고, H사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자그레브무역관은 9월 크로아티아 국제 청년회의소가 개최한 청년사업가 대상 B2B 행사에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B사와 만나 새로운 바이어 발굴에 성공했다. 다양

한 화장품을 취급해본 경험이 있고 자체 유통채널을 보유한 B사가 H사와 손잡을 적격 바이어라 판단해 소개한 것이었다. B사는 H사의 브랜드 라인 20개 제품에 대한 샘플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높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에 크게 만족해 11월 1만 1,000달러 상당의 첫 수입을 진행했다.

자그레브무역관 지원을 통해 크로아티아 첫 수출에 성공한 H사. 갈수록 구체화되어가는 크로아티아 시장의 K-뷰티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B사는 자그레브무역관과 협력해 2019년 크리스마스 시즌, 쇼핑물 가판 제품판매 및 인플루언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현지 인터넷 쇼핑물 프로모션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H사는 2021년에도 수출을 이어가고 있으며 인근 크로아티아의 성공에 힘입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로도 판매망을 넓히고 있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 비자(사증)

우리나라와 크로아티아 양국 간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이 2001년 체결된 바 있어 일반여권소지자는 영리 목적이 아닐 시 90일 이내로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해 사증이 필요하지 않다. 유학, 상용, 취업, 취재 등의 목적으로 크로아티아를 방문한 경우에는 사전에 크로아티아 외교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o 주한 크로아티아 대사관

- 대사: PhD Damir Kusen
-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 97 1302호
- 전화: 02-310-9660

참고로 과거 코로나 기간중 실시된 입국제한조치는 2022년 5월 1일부로 모두 해제되어 별도의 코로나 관련 증빙서류를 소지 및 제시하지 않아도 이전과 같이 입국이 가능해 졌다.

2) 비자 종류

여행비자(3개월)의 경우 무비자로 입국 시 특별한 사증 없이 3개월 체류할 수 있다. 취업비자(최장 3년)는 현지 업체 혹은 한국 지사에 근무 시 고용 허가원에 의해 발급할 수 있으며, 보통 1년 기간의 비자를 발급해주며 비자의 종류는 노동체류허가 쿼터(및 쿼터 외 비자), EU블루카드 및 ICT(Intra-Corporate Transfer permit) 등이 있다

- 노동체류허가 쿼터: 크로아티아정부는 유럽연합(EU) 및 유럽경제지역(EEA) 외 노동자의 크로아티아 내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 산업별 외국인노동체류허가 수를 정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에만 77,205명의 외국인에게 노동 허가가 주어졌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하는 분야로는 건설업과 관광업이 대부분이다. 크로아티아 자체 인구유출도 심하지만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쿼터는 매년 늘고 있다. 산업별 쿼터가 남아 있는 경우 연중 노동허가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및 양식은 크로아티아 내무부 홈페이지(<https://mup.gov.hr/aliens-281621/stay-and-work/stay-and-work-permits-under-the-annual-quota/281664>)에서 가능하다

- 노동체류허가 쿼터 외: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장 외투법인의 외국인 법인장 또는 대체 불가한 주요 업무 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갱신해야 한다, 다만 쿼터 외 비자를 발급 시 크로아티아 현지인 고용의무가 따르며, 쿼터 외 비자발급 대상자의 급여는 전년도 평균급여를 상회해야 한다. (쿼터 외 노동체류허가 1명 발급시, 최소 크로아티아 현지인 3명 고용의무 발생)

- EU 블루카드: 비자발급대상자는 고등교육학위 소지자로 연봉이 동종업계 평균연봉의 1.5배를 초과해야 하며 최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 ICT(Intra-Corporate Transfer permit): 주재원비자로 발급조건은 비자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가 9개월을 초과하며, 전문가, 매니저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고, 크로아티아 동종업계에 내 평균급여 이상의 급여를 수령해야 한다. 비자는 최대 3년까지만 유효하고, 체류연장을 위해서는 최초 3년의 체류기간 만료후 6개월 경과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의 비자로 가족비자, 학생비자 등이 있다,

- 가족비자: 가족의 구성원이 크로아티아 체류를 위해 유효한 비자를 취득한 경우 동반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해 발급되는 비자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학생비자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정식으로 등록 및 허가를 받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비자관련 자세한 사항은 크로아티아 외교부의 아래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http://www.mvep.hr/en/consular-information/visas/visa-requirements-overview/>

3) 비자 취득 시 구비서류

비자를 취득 시 비자 종류의 따라 구비 서류에 차이가 있으나, 공통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하기와 같다.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보험증
- 범죄 경력 증명서
- 거주 증명서(크로아티아 내)
- 거주지 계약서
- 컬러 사진 2매(30X35mm)
- 비자 신청서

일반적으로 학생 비자의 경우는 입학증 및 학생증, 비즈니스 비자의 경우는 재직증명서 등이 더 요구되므로 이 점도 유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 여행증명서 또는 여행목적, 체류숙소, 경비관계 보증, 여행 후 자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보증, 여행방법 등을 증명하는 서류 또한 요구될 수 있다. 한국 내 거주하는 초청자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사증발급 인정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 발급받은 후, 발급된 사증발급 인정서를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송부한다. 사증발급 인정서를 받은 외국인은 사증발급 인정서와 함께 여권, 사증 발급 신청서, 최근에 찍은 여권용 규격 사진 1장, 체류자격에 따른 구비서류를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외화 반·출입 한도

환산금액 10,000유로 이상의 현금 또는 수표 반·출입시 신고 필요

2) 휴대품 면세한도

○ 휴대물품의 정의

-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이 상업용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여행자가 개인용 또는 선물용으로 휴대하는 신품 또는 중고 물품이다. 직업용 품은 장치 또는 설치가 필요한 기계류를 제외되고 통상적으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 면세 한도금액

- 항공, 선박 입국 시 약 430유로(현지화 3,200쿠나)
- 육로 입국 시 약 300유로(현지화 2,200쿠나)
- 만 15세 미만 여행객: 약 150유로(현지화 1,100쿠나)
- 향수, 커피, 차, 휴대용 전자기기 포함
- 기타 개인 사용물품

○ 휴대품별 통관기준

- 술: 알코올 22% 초과 주류 1리터 또는 22% 이하 주류 2리터(포도주, 맥주 제외), 일반 포도주 4리터, 맥주 16리터
- 담배: 궤련(cigarettes) 200개비 또는 엽궤련(cigarillo) 100개비 또는 시가(cigars) 50개비 또는 잎담배(tobacco) 250g
- 향수: 향수 50mL 또는 화장수 250ml
- 의약품: 처방전 등 관련 증빙서 지참 시 최장 1개월분의 개인 의약품 휴대 가능
 - 항정신성의약품은 개인사용 목적을 증명하는 처방전을 소지하여 최대 5일분까지 휴대 가능
- 식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육류 및 육류제품, 우유 및 유제품 등은 수입 불허

○ 반입불허품목

- 불법 마약류, 여행에 필요한 분량 이상의 약품, 무기류, 폭발물, 음란물, 워싱턴협약(CITES)에 의해 보호되는 야생동식물

○ 기타 유의사항 : 출국 시 세금 환급은 물품 구입액이 최소 약 100유로(현지화 750쿠나) 이상일 경우 가능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크로아티아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385-1-4821-282
주소	Ksaverska cesta 111 a-b, 10000 Zagreb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hr-ko/index.do

〈자료원 : 주 크로아티아 대한민국 대사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정부

전화번호	+385-1-4569-222
주소	Trg svetog Marka 2 10000 Zagreb
홈페이지	https://vlada.gov.hr

○ 경제부

전화번호	+385-1-3717-111
주소	Radnika cesta 80, 10000, Zagreb
홈페이지	https://www.mingo.hr/

○ 외교부

전화번호	+385-4569-964
주소	Zrinjevac 7, 10000, Zagreb
홈페이지	http://www.mvep.hr/

○ 상공회의소

전화번호	+385-1-4561-555
주소	Rooseveltov trg 2, 10000 Zagreb

홈페이지	https://www.hgk.hr/
------	---

◦ Jutarnji list(언론사)

전화번호	+385-1-610-3100
주소	Koranska 2, 10000 Zagreb
홈페이지	https://www.jutarnji.hr/

◦ Vecernji list(언론사)

전화번호	+385-1-6610-700
주소	Oreškovieva ul. 6H, 10020, Zagreb
홈페이지	https://www.vecernji.hr/

◦ 상공회의소 산하 투자진흥부

전화번호	385-1-4561-555
주소	Roosveltov trg 2, 10000 Zagreb
홈페이지	http://www.investincroatia.hr
비고	외국인 투자 관련 영문 홈페이지 운영. 각종 프로젝트 정보 검색 가능

〈자료원 :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7.538쿠나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5.700
2	식품	비빔밥	1인분	11.300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9.950
4	식품	신라면	1봉지	1.990
5	음료	커피(아메리카노, 자그레브 지역 카페 기준)	1잔	1.990
6	음료	생수(KONZUM 마트 JANA 일반 소매가)	500ml	0.730
7	음료	코카콜라(KONZUM 마트 일반 소매가)	500ml	0.940
8	의료	항생제	12정	1.30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1.300
10	교통	전차(Tram)요금	기본요금	0.53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1.990
12	서비스	헤어컷(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19.90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INA 주유소 기준)	1L	1.59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49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zagreb kaptol 영화관 기준)	일반	7.020
16	여가	담배(말보로)	1갑	4.640
17	여가	소주(한식당 내 판매 최저가)	360ml	11.900
18	임금	최저임금/월	법정최저	622.00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21300.000
20	금리	콜금리(Structural operations)	%	0.250

〈자료원 :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및 무역관 자체조사〉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크로아티아에서는 현지화인 쿠나(Kuna)가 통용되므로, 달러화나 유로화를 쿠나로 환전해야 한다. 주요 은행, 시내 환전소를 이용하여 환전할 수 있으며, 살 때 기준으로 1달러에 7.54쿠나, 1유로에 7.52쿠나(2021년 9월 기준) 정도이다.

관광 성수기에 일부 관광지에서 숙박비 등을 유로로 지불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쿠나 외 화폐는 사용할 수 없다.

환전방법

자그레브 시내 및 주요 관광지에 환전소가 다수 존재해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된다. 단, 일요일은 대부분 휴점하니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

신용카드는 사용 가능하나, 일부 커피숍, 식당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비자와 마스터 카드가 널리 통용되며, 아멕스와 디스커버 카드의 경우 일부 사용이 불가한 곳이 있다. JCB와 유니온페이 카드는 사용이 불가하다.

이 때문에 크로아티아 방문 시에는 비자나 마스터 카드를 소지하는 것이 좋다.

나. 교통

교통상황

자그레브 시내에는 주차난이 심하며, 일방통행 도로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시내 좁은 도로를 트램(전차)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 시 더욱 조심해야 된다. 보행자 우선 원칙에 따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차를 멈추고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자가용 운전 시 외국인도 녹색의 차량번호판을 부착하게 돼 있고, 책임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다. 운전 시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수시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정된 장소에 주차 및 정차가 필수이다.

자그레브 시내에는 회전교차로가 많은 편이며, 회전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한 회전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운행에 유의해야 한다. 2차선 이상의 회전교차로에서 진입차량과 나가는 차량과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운행에 유의해야 한다.

자그레브 시내의 경우 전차(Tram),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있어 이동이 편리하며, 크로아티아 내에서 지역 간 이동 시에는 철도가 도로보다 기반 시설이 부족한 편이므로 기차보다는 버스를 이용할 때 시간이 덜 소요되고 더 편리하다.

버스

크로아티아는 버스연결망이 광범위하고 고속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버스로 이동하는 것이 기차보다 편리하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에는 교통체증이 심하니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시외버스 및 외곽지역 버스의 경우 휴일에는 배차간격이 30분 이상인 경우가 있으니 미리 시간표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택시

자그레브의 택시는 우리나라나 뉴욕 대도시처럼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는 것보다는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콜택시 시스템이다. 따라서 택시들이 항상 대기해 있는 시내 중심가가 아니라면 길거리에서 택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편이 낫다. 콜택시 전화번호는 060800800, 1414, 1212 등으로 전화로 부르면 5분 내로 오며, 일반 택시요금과 동일하다.

도심 외곽에서는 택시 잡기가 어려우며, 택시 기본요금은 2달러 정도로, 비싼 편이다. 또한, 동일 거리임에도 택시 회사마다 요금이 크게 차이가 난다.

최근에는 우버, 볼트 등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콜택시 서비스가 보편화되어서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물론 현금으로도 택시비를 지불할 수 있다. 하지만 대도시를 벗어나면 사용이 어려우니 이 점 주의해야 한다. 볼트가 우버보다 약간 저렴하다.

전차(Tram)

전차(Tram)는 주요 시내 교통수단으로 대부분의 시내를 관통한다.

티켓은 보통 정류장 근처에 있는 iNovine나 TIsak이라는 신문 가판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탑승 후 트램 기사에게서도 구매할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싸다. 현지 거주자들은 주로 충전식 카드를 이용하며, 이는 전차, 버스 운영사인 ZET 사무실에서 구매할 수 있다.

탑승시 카드리더기에 카드를 태그해야 하며, 티켓의 경우 전차 맨 앞쪽 카드리더기에서 티켓에 도장을 받아야 한다. 불시검문을 통해 무임승차자를 적발하며, 높은 벌금을 부과한다.

외곽지역의 경우, 전차가 내리는 지역에서 바로 버스가 연결돼 있어 불편함이 없으나, 휴일에 버스 배차 간격이 30분 이상일 경우도 있으니 미리 시간표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야간 노선은 1회 이용에 15쿠나이다. 1일 정기권은 30쿠나, 3일권은 70쿠나이므로 필요에 맞추어 구매하면 좋다.

○ 시내 전차요금(가판대 가격/ 트램기사 구매 시 가격)

- 30분 티켓: 4쿠나 / 6쿠나
- 60분 가격: 7쿠나 / 10쿠나
- 90분 가격: 10쿠나 / 15쿠나
- 1일 무제한 : 30쿠나
- 3일 무제한 : 70쿠나

○ 참고사항: 6세 이하 어린이 운임 면제

다. 통신

핸드폰

크로아티아에는 T-Mobile, A1 Croatia, Tele2의 세 이동통신사가 영업하고 있다. 각 이동통신사는 출장자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1일 혹은 1주일, 한 달 선불 SIM 카드를 판매하고 있으니 이를 구매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SIM 카드는 각 이동통신사 매장 혹은 TISAK과 같은 신문가판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자그레브 공항으로 입국하는 사람의 경우 입국장에 있는 TISAK에서 SIM 카드를 구매하면 된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일주일 선불 SIM 카드의 경우 무제한 데이터, 100분 무료 통화 조건으로 75~85쿠나 선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은 이동통신사별로 다르다. 자그레브 시내에서는 세 이동통신사의 품질이 균등하나, 도서 산간지역이나 지방도시를 방문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메이저 통신사인 T-Mobile과 A1 Croatia의 Sim 카드를 구매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와이파이)

모뎀 무선 방식 등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속도는 빠른 편이며 대부분의 시내 음식점 카페 등에서 무선인터넷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 시 설치할 때까지 길게는 2개월 이상 소요된다.

라. 관광명소

◦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Old City of Dubrovnik)

도시명	두브로브니크
주소	Poljana Paska Milicevica, 20000, Dubrovnik
명소소개	두브로브니크는 '아드리아 해의 진주'라고 불리는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이다. 성벽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옛 시가지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지정됐고, 조지 버나드 쇼는 일찍이 '지상 낙원을 찾는다면 두브로브니크로 가라'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에는 드라마 '왕좌의 게임'과 영화 '스타워즈' 등의 촬영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Plitvice Lakes National Park)

도시명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주소	HR 53231 Plitvicka Jezera
운영시간	- 겨울(10월 마지막주 일요일~3월 마지막주 토요일) : 08:00~16:00 - 봄(3월 마지막주 일요일~5월 31일) : 08:00~19:00 - 여름(6월 1일~8월 20일) : 07:00~20:00 - 가을1(8월 21일~9월 30일) : 07:00~19:00 - 가을2(10월 1일~10월 마지막주 토요일) : 08:00~18:00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19.5ha에 달하는 숲 속에 16개의 청록색 호수가 크고 작은 폭포로 연결돼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1979년부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곳으로도 유명하다. 총 10가지의 트래킹 코스가 있으며 각 코스에 따라 2~8시간이 소요된다.

<자료원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홈페이지>

마. 식당

- 현지식당

◦ 녹트르노(Nokturno)

도시명	자그레브
전화번호	+385-1-4813-394
주소	Skalinska ul. 4, 10000, Zagreb
가격	20~150쿠나

영업시간	평일 : 08:00~24:00 금, 토 : 09:00~01:00 일요일, 휴일 : 08:00~24:00
휴무일	없음
소개	가격대비 음식이 우수해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도 많이 찾는 대중적인 식당
비고	처음에는 음식이 짭 수 있으므로 주문할 때 소금 양 조절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 바탁 그릴(batak grill)

도시명	자그레브
전화번호	+385-1-4833-370
주소	Centar Cvjetni, Trg Petra Preradovica 6, Zagreb이외에도 여러 곳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가격	70~200쿠나
영업시간	11:00~23:00 지점마다 영업시간 상이할 수 있음
휴무일	없음
소개	크로아티아 바베큐 프랜차이즈점으로 자그레브 시내에 10곳의 지점이 있다.
비고	음식이 짜기 때문에, 주문 시 소금양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자료원 :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 한국식당

◦ 크로케이(Cro.k)

도시명	자그레브
전화번호	+385-1-4819-525
주소	Pod Zidom 4, Zagreb
가격	80~150쿠나
영업시간	11:30~23:00
휴무일	월요일
소개	자그레브 엘라치치 광장 근처로 접근성이 좋으며 찌개, 전골, 구이 등 종류가 다양함

◦ 옴마식당(OMMA 식당)

도시명	자그레브
전화번호	+385-99-467-0701
주소	Unska ul. 2B, 10000, Zagreb

가격	40~100쿠나
영업시간	11:00~21:00
휴무일	일요일
소개	자그레브 대학교 옆에 위치한 식당으로 현지 입맛에 맞춰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다.

〈자료원 :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더블트리(Double Tree by Hilton Zagreb)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Ulica Grada Vukovara 269a, 10000 Zagreb
전화번호	+385-1-6001-900
홈페이지	https://doubletree3.hilton.com/en/hotels/croatia/doubletree-by-hilton-hotel-zagreb-ZAGCRDI/index.html?WT.mc_id=zELWAKN0EMEA1DT2DMH3LocalSearch4DGGenericx6ZAGCRDI
숙박료	600~900쿠나
소개	자그레브 시내 비즈니스 중심가에 위치해 있으며, 헬스장, 수영장, 터키식 목욕탕, 핀란드식 사우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에스플라나데 자그레브(Esplanade Zagreb)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Ul. Antuna Mihanovica 1, 10000, Zagreb
전화번호	+385-1-4566-666
홈페이지	https://www.esplanade.hr/hr/mainpage.html
숙박료	900~1,100쿠나
소개	자그레브 기차역 인근에 위치한 5성 호텔이다. 파리 이스탄불을 잇는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탑승객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1925년에 세워진 유서 깊은 호텔이다.

○ 셰라톤(Sheraton)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Ul. kneza Borne 2, 10000, Zagreb

전화번호	+385-1-4553-535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zagsi-sheraton-zagreb-hotel/?scid=bb1a189a-fec3-4d19-a255-54ba596febe2
숙박료	600~900쿠나
소개	자그레브 기차역 및 자그레브 시내 중심가와 약 50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는 5성 호텔이다.

〈자료원 : 각 호텔 홈페이지,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 게스트하우스

o 러브크로아티아(Love Croatia)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Mesnicka ulica 5, Gornji Grad, 10000 Zagreb, Croatia
전화번호	+385-91-6200-800
홈페이지	http://www.lovecroatia.co.kr/
숙박료	최저 25유로에서 최대 스위트룸 250유로까지 다양
소개	엘라치치 광장 근처로 접근성이 좋고 시설이 좋음.

o 돌라츠 게스트 하우스(Dolac Guest House)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Opatovina 14, 10000, Zagreb, Croatia
전화번호	+386-95-735-7692
홈페이지	http://dolac.kr/
숙박료	1인 기준 30-40유로
소개	자그레브 시내 유명 재래시장인 돌라츠시장 인근에 위치, 주요 관광지와 접근성 및 시설이 좋다.

o 코코하우스(CoCo House)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Berseka ul. 2, 10000, Zagreb
전화번호	+385-99-250-7937
숙박료	1인 기준 30유로 내외 1인실부터 6인실까지 다양
소개	자그레브 중심에서 10분 내외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투숙객에게 제공되는 한식이 맛 있기로 유명하다.

사. 치안

치안상황

크로아티아는 현재 남동유럽에서 치안 상황이 가장 양호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경범죄, 소매치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및 렌터카 업체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과실 유무를 판단하며, 교통범칙금이 부과될 시 현장에서 즉시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된다.

- 경찰: 192
- 도로 긴급지원서비스: 1987

2) 여권/지갑 분실

크로아티아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여권분실 및 개인소지품 분실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분실 시 대사관으로 연락해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

- 대사관 연락처: +385-1-4821-282
- 대사관 긴급연락처(근무시간 외): +385-91-2200-325

3) 응급 전화번호

응급상황 발생 시 먼저 대사관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시중 약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의사 처방전을 요구하나 간단한 소화제, 감기약, 아스피린 등은 처방전 없이도 구입 가능하다. 이외 현지 긴급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다.

- 화재: 193
- 구급차: 194
- 긴급상황 신고 및 구조요청: 112
- 해양사고 신고 및 구조요청: 195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많이 활동하고 있어, 외국인용 주택 임차가 어렵지는 않다. 보통 중개수수료는 임차료의 1개월분이 책정되며, 1달 치의 임차료를 보증금으로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 부엌시설, 냉장고, 전기 오븐, 식기세척기, 세탁기 등 기본 가구가 갖추어진 경우가 많으며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서 계약서에 사전 명문화 하는 것이 좋다.

주택 관련 보험의 경우 화재, 도난, 누수 등은 일반적으로 임대주가 부담하나 주택 내 비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보험을 가입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전기세, 가스비 등 공공요금에 비싼 편이므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주요 웹사이트

- 유로빌라(eurovilla.hr): 영어가 지원되기 때문에 쉽게 매물을 확인할 수 있다.
- 뉴슈칼로(njuskalo.hr): 크로아티아의 대표 온라인 장터로 주택뿐만 아니라 차량, 가구 등의 매물이 올라온다. 영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번역기를 이용해야 한다.

전화

통신 인프라 확대로 인해 크로아티아 전 지역에서의 이동전화 송수신은 매우 양호한 편이다. 2022년 기준 크로아티아 전 지역에 4G 제공 중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5G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이동통신회사들은 월정액, 월 사용액 기준제 또는 선불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상 200쿠나(3만 6천 원) 월 정액을 이용하면 통화 및 모바일 데이터 사용이 무료이다. 여행객들은 주로 현지 심카드를 구매하여 선불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90쿠나(1만 8천 원) 모바일데이터 프리 심카드를 이용하면 7일 동안 통화 및 인터넷 이용이 무료이다.

전압/플러그

전기 규격은 50HZ, 230V이며 한국에서 사용한 전기 코드도 현지 전기 콘센트와 호환된다.

식수

현지의 수도물에는 석회가 많이 포함돼 있어 미네랄 워터를 사서 마시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가스가 있는 경우와 가스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야 한다.

호텔에서의 미네랄 워터는 비싸므로 호텔 체크인 시 인근 슈퍼에서 미네랄 워터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자동차 공식 대리점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 중고차의 경우도 공식 딜러에게 구입하는 것이 다소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검증된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다. 크로아티아는 아직 수동변속 차량의 인기가 높으므로, 자동변속 중고차는 구입하기가 다소 어려운 편이다.

한국과 상이한 자동차 검사 기준으로 인해 한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가지고 올 경우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 자동차 운전석은 한국과 같이 왼쪽에 위치
- 현지 구입 시 각종 세금 등으로 차량 가격이 비싼 편이고 차량 구매 후 인도 시까지 통상 약 2개월 소요되나 2022년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해 차량 인도가 더 오래 걸리고 있다.

차량가격

폭스바겐, 르노, 스코다가 가장 대중적인 자동차이며, 하기 사이트에서 매물을 비교할 수 있다.

- o 참고 중고 자동차 매매 사이트
 - <http://www.oglasnik.hr>
 - <http://www.auti.hr>
 - <http://www.vidiauto.com>
 - <http://www.njuskalo.hr/auti>
 - <http://www.neostar.hr>
 - <http://www.trcz.hr>
 - <http://www.saz.hr>(최대 자동차 거래 사이트, 실제로 시장에 가서 차량 확인 후 구매 가능)
- o 자동차 매매 관련 잡지
 - AUTO BLIC: <http://www.blic.rs/Auto>
 - AUTO KLUB: <http://www.jutarnji.hr/autoklub>

운전면허 취득

1) 크로아티아 자동차운전면허 교환 발급 요건

- o 크로아티아 체류허가(6개월 이상) 소지
- o 유효한 한국 여권 소지
- o 유효한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종별 무관)

2) 구비서류

- o 교환(발급) 신청서
- o 크로아티아 체류허가(6개월 이상)
- o 한국 여권
- o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
- o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 번역본(공증본 또는 인증본)
 - 면허증 번역의 경우, 주크로아티아 대사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o 신체검사서(최근 6개월 이내 발급본)
 - 크로아티아 내무부 운영 보건소, 지자체 운영 보건소 및 일부 사립 병원에서도 발급 가능함.
 - 크로아티아 내무부 운영 보건소(<http://www.dzmap.hr/default.aspx?id=9>) 및 지자체 운영 보건소(<http://dzz-centar.hr/medicina-rada/medicina-rada>)에서 정보 확인 가능
- o 컬러사진 1매(3.0cm*3.5cm)

- 수입인지세 70쿠나
- 면허발급 수수료(일반: 151쿠나, 급행: 200쿠나, 긴급: 450쿠나)

3) 담당기관

- 크로아티아 내무부 산하 교통경찰
 - 자그레브 제1교통경찰서(01-6333-410, Heinzelova ulica 98, 10000 Zagreb)
 - ※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교통경찰서에 문의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크로아티아 중앙은행(Hrvatska narodna banka) - <http://www.hnb.hr>
- 자그레바치카 은행(Zagrebaka banka) - <http://www.zaba.hr>
- otp 은행(banka) - <http://www.otpbanka.hr>
- 크로아티아 재건·개발은행(Hrvatska banka za obnovu i razvitak) - <http://www.hbor.hr>
- 크로아티아 우체국 은행(Hrvatska potanska banka) - <https://www.hpb.hr>
- 상업 은행(Privredna banka) - <http://www.pbz.hr>
- 라이파이젠 은행(Raiffeisen banka) - <http://www.rba.hr>
- 에르스테 은행(Erste banka) - <https://www.erstebank.hr>

계좌 개설방법

크로아티아 내 은행 중 대형 은행에서 외국인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계좌개설 시 외환 계좌와 현지화 계좌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이나 제3국으로의 송금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며, 계좌에 외환만 있어도 예금 인출 시 자동으로 현지화로 환전해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단, 계좌이체 등 수수료가 비싼 편이며, 여행자 수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of Zagreb

도시명	자그레브
커리큘럼	영국 학제를 따름
학비	- 유치원: 5,600유로 - 초등학교(Grade 1~6): 83,000쿠나(11,066유로) - 중학교(Grade 7~9): 91,000쿠나(12,133유로) - 고등학교(Grade 10~12): 99,000쿠나(13,200유로) - 입학비: 1,185유로(약 7,700쿠나)

홈페이지	https://www.britishschool.hr
비고	2013년부터 자그레브 명문 사립 초등학교인 Kreativan razvoj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설립되었음

○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of Zagreb

도시명	자그레브
커리큘럼	비영어권 학생은 ESI 을 수강하거나, 영어/수학 능력평가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학비	- 유치원: 6,700유로 - 초등학교(Grade 1~5): 16,100유로 - 중학교(Grade 6~8): 18,375유로 - 고등학교(Grade 9~12): 18,680유로 - 입학비: (유치원) 500 유로, (초~고등학교) 2,000유로
홈페이지	http://www.aisz.hr

○ Bright Horizons International British School of Zagreb

도시명	자그레브
커리큘럼	영국 학제
학비	1학년부터 8학년 까지 동일 7천 200유로
홈페이지	http://www.britishschool-zagreb.hr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 현지학교

○ Privatna klasična gimnazija

도시명	자그레브
커리큘럼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중시함.
학비	36,000쿠나(약 4,800유로)
홈페이지	http://gimnazija-privatna-klasica-zg.skole.hr/
비고	크로아티아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함.

<자료원 : 학교 홈페이지>

마. 병원

○ Klinički bolnički centar Zagreb(KBC Zagreb)

도시명	자그레브
-----	------

주소	Kispaticeva 12, 10000 Zagreb, Croatia
전화번호	+385-1-2388-888
진료과목	종합병원

◦ Klinicki bolnicki centar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Vinogradska cesta 29, 10000 Zagreb, Croatia
전화번호	+385-1-2902-444
진료과목	종합병원

◦ Klinicka bolnicka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Avenija Gojka Suska 6, 10000 Zagreb, Croatia
전화번호	+385-1-2902-444
진료과목	종합병원

〈자료원 : 주 크로아티아 대한민국 대사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아레나몰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Ul. Vice Vukova 6, 10000 Zagreb, Croatia
홈페이지	https://www.arenacentar.hr/hr/
비고	자그레브에서 가장 큰 쇼핑몰로서 영화관, 음식점 등이 함께 입점해 있음.

◦ 에베뉴몰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Avenija Dubrovnik 16, 10020, Zagreb
홈페이지	http://avenuemall.hr/

비고	아레나몰보다 규모는 작으나, 역시 영화관, PC방, 음식점들이 입점해 있어 쇼핑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쇼핑몰임.
----	---

<자료원 : 각 쇼핑몰 홈페이지>

- 식품점

◦ 돌라츠 시장(Dolac Market)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Dolac 9, 10000, Zagreb, Croatia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비고	자그레브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재래시장으로 관광명소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지인들도 애용한다.

◦ 콘쑸(Konzum)

도시명	크로아티아 전역
주소	크로아티아 전역
취급 식료품	대형 쇼핑몰로서, 모든 식료품 취급
비고	크로아티아 대표 마트

<자료원 :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 기타 편의시설

◦ Riverside Golf Zagreb(골프장)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Jadranska ul. 6, 10000, Zagreb, Croatia
홈페이지	http://www.riversidegolf.hr/
소개	자그레브 소재 골프장

◦ Bowling Centar Zagreb(볼링장)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Trg Drage Iblera 10, 10000, Zagreb, Croatia
홈페이지	https://www.bowling-zagreb.hr/
소개	자그레브 시내 소재 볼링장

◦ Sporting Gym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Nova ves 17, 10000 Zagreb, Croatia
홈페이지	https://www.orlandofit.hr/en/
소개	자그레브 시내 소재 헬스장으로 대중적

〈자료원 : 각 편의시설 홈페이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시작일	종료일
신정	2023-01-01	2023-01-01
예수공현축일	2023-01-06	2023-01-06
부활절	2023-04-10	2023-04-09
근로자의 날	2023-05-01	2023-05-01
건국기념일	2023-05-30	2023-05-30
성체축일	2023-06-08	2023-06-08
성 스테판의 날	2023-12-26	2023-12-26
승전기념일	2023-08-05	2023-08-05
성모승천축일	2023-08-15	2023-08-15
모든 성인축일	2023-11-01	2023-11-01
성탄절	2023-12-25	2023-12-25
현충일	2023-11-18	2023-11-18
반파시스트 투쟁 기념일	2023-06-22	2023-06-22

〈자료원 :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10. KOTRA 무역관 안내

○ 자그레브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Radnicka cesta 52/VIII, 10000, Zagreb, Croatia
- 전화번호: +385 1 4815 102
- 이메일: kotra@koreatrade.hr

공항-무역관 이동

무역관은 Green Gold 빌딩 R2 섹션 8층에 위치해 있으며 택시 혹은 버스, 트램을 이용해 내방할 수 있다.

○ 택시

- 약 200쿠나(약 28달러)를 지불하면 공항 청사 앞에 대기하고 있는 공항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요시간은 약 30분이다.
- 우버나 볼트 등 택시 어플을 이용하면 약 120쿠나 정도로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 버스-트램

- 공항에서 공항버스(30분 간격으로 운행)를 이용해 자그레브 시내 버스터미널(Autobusni Kolodvor)에서 하차한 후, 트램(번호 2; Savisce행)을 이용해 무역관 인근의 Radnicka역에서 하차한다(1정거장, 약 2분 소요). 약 100m 정도 거리에 자그레브 무역관이 위치한 Green Gold 빌딩이 있다. 또는, 하차 후 Avenija Marina Drzica 거리를 따라 남쪽으로 약 5분간 도보로 이동해도 된다(Double Tree Hotel by Hilton 바로 옆에 위치).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